"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 1주년"





세종 완성!

청와대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앞당기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19년도 하반기 의사일정 안내

- 제57회 임시회 / 2019. 8. 27. ~ 9. 10.(15일간)
- 제58회 임시회 / 2019. 10. 11. ~10. 25.(15일간)
- 제59회 2차 정례회 / 2019. 11. 11. ~ 12. 13.(33일간)









SEJONG CITY COUNCIL



의정 포커스

[개원 1주년 특집] 제56회 제1차 정례회 성과

5분 자유발언

시 기록물 관리하는 세종기록원 설립 제안 外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윤리<mark>특별위원회 구성</mark> 결의안 등





MI 중 특별자치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회사

SEJONG CITY COUNCIL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장입니다.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새 지평을 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 홍문표 의원님, 도종환 의원님. 김중로 의원님 전국 시 · 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신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님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 협의회 공동회장이신 황명선 논산시장님. 이번 토론회 준비에 힘을 모아주신 대전광역시의회 김종천 의장님. 충청북도의회 장선배 의장님, 충청남도의회 유병국 의장님, 전국시도에서 오신 지방분권 T/F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치시 이춘희 시장님과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박재묵 대전세종연구 원장님과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지방분권의 상징도시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번 정책토론회가
열릴 수 있게 되어 그 감회가 남다릅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방분권의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인 동시에 주권재민의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보편타당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이제는 지방분권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가 하루속히 제 모습을 되찾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정치적 현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지방의회 의원 모두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이번 정책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기 개정 촉구입니다. 개정안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민 자치권 강화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밀접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구로 제 목소리를 내야만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인사독립권과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이 조속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입니다.
삼권분립의 원칙 아래 국가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은 헌법적 가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정 최우선 핵심과제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입니다.
지방분권을 통한 시민주권시대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과 언론인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전국 3,750(삼천칠백오십)명에 이르는 많은 지방의원들의 염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오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27일



CONTENTS

세종의회소식 **통권 제22호**



4 의정포커스

[개원 1주년 특집] 제56회 제1차 정례회 성과

6 의원 人터뷰

유철규 의원 이태환 의원 박성수 의원

12 의정뉴스

공무국외활동 전부 개정 조례안 통과 외

31 의장 기고

역사와 첨단이 공존하는 세종시 시민주권 실현한 세종시의회 2019행정사무감사

33 5분 자유발언

40 긴급현안질문

42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1 시민기획 캠페인

'베리어프리' 장애인 화장실 벽을 낮추다

52 주요안건 처리현황 × 인포그래픽

55 입법정보

85 독자투고

남편들을 응원하며…

86 세종시티투어

도심 속 피서지? 이곳에 가면 있다!

88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90 포토에세이



개원 1주년 특집

'시민동행'의지 빛났다

제56회 제1차 정례회 성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5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쳤다. 총 37일간 진행된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세종시교육청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통과되는 등 많은 성과를 남겼다. 그중에서도 언론과 시민들이 주목한 제56회 정례회의 주요 성과들을 모아봤다.

행감 지적사항 총 431건…철저한 준비 호평

개원 1주년을 맞은 제3대 세종시의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의기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제56회 정례회 기 중 채택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총 431건의 지적사항들이 담겼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시정 3건과 주의 4건 등을 포함한 16건, 행정복지위원회는 시정 11건과 주의 6건 등 147건,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정 21건과 주의 7건 등 176건, 교육안전위원회는 총 92건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했다. 이같은 성과는 시민단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종시민 44명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링단이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료 열람과 안정적인 모니터링 환경 제공 측면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모범적안 사례라고 호평했다. 특히 타 시의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전에 일정 기간 시민제보를 받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열린 세종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대체적으로 의원들의 행감 준비가 돋보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신중한 논의 거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세종시의회는 5월 20일 제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6월 29일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고 윤형권 의원과 이윤희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내용을 6월 25일 제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윤리 특별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윤리 또는 징 계·자격에 관한 사항 심사를 맡게 된 다. 서금택 의장은 "윤리특위는 유사시 가동되기 때문에 의원들의 비위와 비리 등을 전제라고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윤리특위 운영



은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윤형권 위원장은 제 1차 회의에서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 이윤희 부위원장은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게 끔 하는 것도 저의 노력이고 역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 개정안 통과

세종시의회는 의원 공무국외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윤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원 공무국외활동 전부 개정조례안'이 제 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단은 현행 7명에서 민간인을 포함해 9명으로 늘고,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해야 한다. 또 출국일 40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출장 목적과 다르게활동한 내역이 확인될 경우 비용을 반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후 관리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는 지방의회의 공무국외활동관련한 외유성 논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연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된 조례 오류 전수 조사…시스템 재정비 계기

이번 제5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공포 오류'에 대한 지적은 최대 성과로 주목을 받았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노종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포된 조례의 오류를 전수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그 결과 1차와 2차, 제3차 추가 조사에서 세종시 출범이후 공포된 조례 1090건 중 321건에서 내용 누락과 임의 수정 등 오류가 발견됐다. 이에 노 의원은 6월 25일 제5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노 의원은 세 차례에 걸친 조사결과가 상이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 수립을 통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 노 의원은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의회의 의결로써 조례안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문 인력 확충과 조문 검토 프로그램 도입, 시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은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밀폐형 보온시설에서 1 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라돈가스가 기준 치의 1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지적했

다. 밀폐형 보온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도 제기된 바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 형식적인 안전 신문고 처리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전도 ▲ 잦은 업무분장 변경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및 시민안전 소홀 우려 ▲ 유사시 대비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 ▲ 현장 대응 소방공무원 직급 상향 ▲ 건축 허가 시 관 주도로 지원책 강구 ▲ 차별화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책 마련 ▲ 세종시 감염병 대응체계 관리 부실 ▲ 안전관리비 부실 집행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 필요성 제기 ▲ 인공지능 기반 CCTV 도입 제안 ▲ 독립성·전문성·거버년스 관점에서 세종시문화재단 발전방향 설정 ▲ 버스승강장 환경 관리 부실 ▲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개선 등 다양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 이번 회기의 성과에 대해 서금택 의장은 "'세종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라는 슬로건을 실현한 회기로 기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의회 人러뷰 **1** 세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시민 행복도시'를 꿈꾸다

세종시의회 유 철 규 의원

유철규 의원(보람 · 대평)은 22년간 국토교통부에서 공직 생활을 한 자타공인 '행정 전문가'다. 유 의원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향해 지난 1년간 의정활동에 전념해왔다. 그는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집무 시간에는 사무실 문을 항상 개방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열린 의정'을 실천하며 시민들과 약속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를 만났다.

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한 소감은?

초보 정치인으로 아직 어색하지만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열심히 앞장서고 있어 어깨도 무겁고 바쁘지만, 행복하다. 국토교통부에서 22년을 근무하는 등 중앙부처 공직생활 35년을 마감하고 정년을 4년 남긴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한 후, 지난 해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사실 선거 출마를 결심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정치를 꿈꿔본 적이 없다. 처음 걷는 길에 대한 두려움보다 언젠가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다는 확신을 가졌고 제가 흘리는 땀과 노력이 세종시 미래를 조금씩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당선의 기쁨도 컸지만시민에 대한 약속과 믿음을 잘 실천해야한다는 중압감은 여전하다.

지난 1년간 세종시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중점을 둔 정치철학은?

중용(中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자 천지도야(誠者 天之道也), 성지자 인지도야(誠之者 人之道也)'. '성실이 하늘의 도리요, 성실을 실천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라는 뜻인데 재해석하면 '무 엇이든 하고자 하면 얻을 수 있으니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삶에 참 맛이 있다'는 것이 제 인생 좌우명이자 정치철학이다. '시민이행복한 도시'는 실천하여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제3대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은?

제3대 의회는 저를 비롯한 초선 의원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보니 기대와 함께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고 크고 작은 부분에서 시행착오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들도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들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됐고, 제3대 세종시의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제가 시의원으로 출마를 결심할 때부터 저의 가슴 속 깊이 담아온 '시민이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종시민이 꿈꾸는 세상'을 알아야 한다. 막연히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아니라 '세종시민이 진정 원하고 꿈꾸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중앙부처와 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보고 배운 실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세종시 정책을 기초부터 바꿔나가는 활동을 하겠다.

세종시의 당면 현안은 무엇이며 해결 과제는?

생활체육시설은 2030년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에 걸맞게 건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시민과 아 이들이 활용 기회를 갖도록 조치했지만 아직도 개선할 점이 너무나 많다. 생활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집 주변에 가까이 있도록 소규모로 분산, 설치되어야 하는 반면, 같은 종목의 시설 일부는 대규모로 집적화해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세종시를 홍보하고 인근에서 세종시의 즐길 거리를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모아 건설할 필요도 있다.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통해 주말마다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더욱 활기 넘치는 도시로 변화시켜야 한다.

Q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중에 최대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 해 7월 5분 자유발언으로 시청 및 교육청의 '총무과' 명칭을 변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총무(總務)'란 표현은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는 중앙집권적 사고의 산물이며,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적 사고 방식의 표현으로 일제의 잔재 중 하나인 만큼, 우리 세종시가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올해 2월 있었던 조직개편부터 시청을 비롯해 책임 읍·면·동의 총무담당과 교육청 '총무과' 명칭을 '운영지원과' 등으로 변경했다. 또한 지난 해 2차 추경에서 30만 세종시민이 이용할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효율적인 배치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생활체육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예산을 배정했으며, 세종시는 지난 6월 13일 '세종시 공공시설 5개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하는 등 50만 계획도시에 걸맞은 생활체육시설 종합계획이 수립했다.

제3대 전반기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임기가 1년여 남았는데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은?

국토부, 행복청, LH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에 더욱 힘을 쏟고 싶다. 특히, 중앙부처의 이전과 함께 세종시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도 세종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다양한 니즈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지역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등 세종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시민으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명품도시란 도시환경, 건축물, 교통, 안전 등도시 기반이 잘 갖추어져 겉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물론 자연과도시환경을 보호하는 등 '시민의식'이 함께 성장해야만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저를지역 일꾼으로 뽑아주신 세종시민들과 함께 명품 세종시를 만들어나가겠다. 시민들의 꿈과 기대를 현실로 이끌어내는 시민대표가 되도록 더욱 정진해나가겠다.

세종의회 人러뷰 ② 세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시민이 뽑은 2년 연속 '행감' 우수의원

세종시의회 이 태 환 의원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초선의원의 비율이 높은 데 대한 걱정과 우려가 적지 않았다. 개원 1주년이 지난 지금, 세종시의회에 대한 시민 여론의 긍정적 변화는 고무적이다. 특히 '조치원 토박이'로 세종시 읍·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이태환 의원(조치원읍 신안·서창·봉산·신흥리)은 의회 운영의 안정을 이끈 재선의원이자 시 행정의 혁신을 이끄는 젊은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한 소감은?

1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제3대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다 같이 공부하는 의회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시민단체 모니터링 평가 결과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에 보람을 느꼈다. 시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주신 결과여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

지난 1년간 세종시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중점을 둔 정치철학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갖춰야 될 기본 덕목들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직종, 성향,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시민들을 위한 최적의 정책적 방안을 찾고,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앞으로 1년여 남은 제3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내 역점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다. 하지만 세종시 안에서 균형발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라는 의미가 대내외적으로 퇴색될 수 있다. 일례로 '10만 조치원 건설'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자리 등 청년층들이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서 관내 지역 간 균형발전이 먼저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그러한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도 열정적인 의 정활동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② 2025년까지 인구 10만명이 거주하는 조치원 건설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은?

그동안 SB플라자와 세종창업키움센터 완공, 동서연결도로 개설 사업과 조치원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추진 등 괄목한 만한 성과들을 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조치원읍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0~9세, 10~19세, 30~39세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세대가 매해 유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조치원 인구 10 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조치원 지역면적 확대는 물론, 주거단지와 상업·교육 시설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인 일자리 정책 역시 필요하다. 지난 해 발표된 연서면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인구유입이 기대된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인구유입을 조치원 지역 내 정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준비한다면 10만 조치원 건설의구체적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먼저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일을 하게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의원이라는 직위가 시민의 대변자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 순간 고민해나가겠다. 또한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빠른 세종시의 변화 속도에 발 맞춰 의견 수렴과 여론을 반영한 행정 서비스 개선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약속도 드 린다. 늘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세종의회 人**러뷰 ③** 세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매 순간 진실과 성실, 절실 다짐"

세종시의회 박 성 수 의원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종촌)은 15년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정무적 감각을 익혀왔다. 이는 박 의원이 초선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모니터단이 뽑은 행정복지위원회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비결이기도 하다. '민생은 정책에서 나오고 정책은 정치에서 나온다'는 정치철학을 토대로 민생 입안과 시정 견제에 앞장서는 그를 만났다.

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한 소감은?

벌써 3대 의회 개원 1주년 소감을 이야기 하게 되다니 선거 과정과 당선, 그리고 개원 이후 의정활동 등 여러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갈 길이 멀지만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땀 흘리는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에 지나온 1년보다 더 열심히 시민을 위해 달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 세종시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중점을 둔 정치철학은?

당선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를 보좌하며 가까이에서 그 분의 정치철학을 몸에 새겨왔습니다. 오랜 정치생활 속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이해찬 국회의원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평소 그 분의 말씀처럼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을 가슴 속 깊이 다짐하며 의정활동 매 순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대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은?

출범 7년차 세종시의 부족한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 삶속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세종시에서 지방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치는 시간이었고,이 시간들을 발판으로 앞으로 3년은 보다 성숙된 자세로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적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종시민만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시의 당면 현안은 무엇이며 해결 과제는?

민생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야의 과제들이 당면 현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그 중 하나를 꼽자면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꼽고 싶습니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개헌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보다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알리고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 모두가 함께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Q 지난 의정활동 중 최대 성과를 꼽는다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인 조례는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개정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5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치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노력하였습니다. 지난 두 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례와 관련해미비점을 지적한 것도 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실과부합하지 않는 조례의 정비를 통해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치가 반영된조례를 마련하기 위해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행정복지위원회는 시 행정 전반을 살펴보는 등 시민의 삶과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 제점을 찾아내고 그 인식을 기반으로 정책개발과 조례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세대, 계층, 연령 등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말씀 중 "민생은 정책에서 나오고, 정책은 정 치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 스스로에게 정치인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번 질문을 던지게 하는 말입니다. 정치인 으로서 매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으로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u>의정뉴스</u> 12 세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세종시의회 **의정뉴스** NEWS



'의원 공무국외활동 전부 개정조례안' 통과··· 사전·사후 관리 깐깐해진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월 25일 제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앞서 6월 17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안 개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이윤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원 공무국외활동 전부 개정조례안'이원안 가결되었다. 이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빚어진 일탈 행위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7명인 심사위원단을 민간인 5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한 것이 크게 눈에 띈다. 출장계획서도 출국일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명시해 심사위원회의 심사 강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출장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용반환 규정을 마련해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 춘 규정도 담겨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안찬영 의원은 행정안전부 권고안보다 선행해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안 의원은 "사무처는 다양한 모범사례를 수집해 의원들 에게 제공함으로써 세종시의회가 선도적인 공무 국외출장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시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은 시의회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시동

윤리특위 상설화로 청렴성 향상과 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제56회 제1차 정례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현)가 제안한 '윤 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상설화되지 않았던 윤리특별위원회(이 하 윤리특위) 출범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세종시의회는 2020년 6월 30일까지 김원식, 노종용, 상병헌, 유철규, 윤형권, 이재현, 이윤희, 임채성, 채평석 의원 등 9명을 윤리특위위원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특위는 제1차 회의를 통해 윤형권 위원장과 이윤희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를 제56회 정례회 2차 본희의에서 보고했다. 김명수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거나 폭력, 욕설, 비방, 뇌물수수 등의 부적 절한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 검증 사안 등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윤리특별 위원회 상설화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시의원 모두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해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 하게 수행해 임기 동안 윤리심사나 징계 사안이 단 한 건도 발생 하지 않도록 서로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주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 300여명 참석 '대성황'

충청권 4개 시 · 도의회 주최로 의회 독립성 · 전문성 강화 방안 등 토론 서금택 의장 "지방의회에 인사독립권과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조속히 부여해야"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장 서금 택)가 주관하고 충청권 시·도의 회가 주최한 '지 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정

책토론회'가 6월 27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세종시의회 의원들과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홍문표·도종환·김중로 국회의원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 의회 회장인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 의회 공동 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 앞서 토론회 참석자들은 피켓을 들고 지방자치법 개 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1부 개회식은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과 이윤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회에 인사독립권과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조속히 보장해야한다"며 "지방분권을 통한 시민주권시대가 더욱 가까워질 수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장선배 충청북도의회 의장, 유병국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환영사를 남겼다. 또 홍문표, 도종환, 김중로 국회의원과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인사말에서 "시민주권 정책을 실행하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방정부에서 시민에게로 더 폭넓은 권한 이양이 필요함을 실감한다"면서 "토론회를 계기로 근30년 동 안 지방자치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김상봉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장이 발제를 맡았다. 박성수 세종시의회 의원과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 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단장,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김수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최호택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장,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상봉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요 논제들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 전문의원제의 과제 및 문제점과 지방의회 전문성 및 정책기능 강화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인사권 독립의 의의와 구체적인 검토 과제, 인사청문회제도 등에 관해 제언했다. 특히 박성수 세종시의회 의원은 토론회에서 ▲ 자치입법권 강화 ▲ 인사권 독립 및 조직권확대 ▲ 의회 역량 강화 ▲ 예산편성권 보장 ▲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보다실질적인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으로 이어지는 노력과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해 지 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등 지방의 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정책토론회에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는 제8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추진 경과 등 주요 현안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조치원 도시재생사업 열정 결실

2019도시재생 산업박람회서 세종시'대통령상'기관 수상 영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평리 등에서 시작된 '세종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4월 17일 인천항 제8부두에서 열린 2019도시재생 산업박람회 개막식에서 조치원 도시재생 사업이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원도심을 대표하는 조치원 (원리·교리·상리·평리·명리·정리·침산리)을 지역구로 하는 시 의원으로서 낙후된 조치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도시

재생 뉴딜사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서 의장은 조치원 출신으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시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강원연단공장 이전과 지역도시 재생사업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서 의장은 제2대 세종 시의회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한 이래

본격적으로 강원연탄 이전 문제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먼저 석탄 분진으로 수십년간 생활에 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강원연탄공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으며, 강원연탄 이전 연구모임도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강원연탄공장 자진폐쇄를 이끌어 냈으며, 폐공장 부지를 시민들이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녹지공

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또한 서 의장은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세종시 도시재생 대학에 입학하여 주민들과 함께 평리 문화마을만들기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조치원읍 평리 마을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문화마을'에 선정되는 데에 일조했다.

이어 서 의장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주민과 기업이 함께 만

드는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 사업에도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여 '조치원 상리 역세권개발 사업'이 중앙평가대상지로 선정되는데기여했다.

서 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그 동안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 이춘희 시장과 관계 공 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에도 적극 노력하여 지 속적으로 원도심이 활



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장은 2020년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조치원 전통시장이 개설된지 250주년이 되는 해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도농상생발전 차원에서 기념행사 개최를 제안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6 세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 모교 조치원중서 특별강연

학생 200여명에게 '자신감 넘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자'고 강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6월 17일 조치원중학교 3학년 200여명을 대상으로 약 1시간 동안 특별강연을 했다.

서금택 의장은 도입부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일제강점 기와 한국전쟁 당시 조치원 지역에 얽힌 국난 극복의 역사를 소개했다.

또한 서 의장은 동국문헌비고 향시편에 기록된 조치원장의 역사를 토대로 2020년 250주년을 맞는 조치원장에 대해 '잊지 않아야 할 우리 지역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장은 지난 7년 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낸 세종시의 변화상을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국가균형발

전과 지방자치의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도 했다. 이어 조치원중학교 18회 졸업생인 서 의장은 이날 강연의 주제인 '자신감 넘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자'에 걸맞게 후배 이자 미래를 이끌 주역들에게 꿈과 열정의 가치를 역설했다. 서 의장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면 못할 일이 없다" 면서 "행정수도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종시에 대 해 자긍심을 갖고 학생의 본분에도 충실해서 우리나라를 이 끌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날 조치원중 3학년 학생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서 의장의 특강을 경청했으며 강연 종료 후에는 박수로 화답했다.



'행감 최우수의원' 세종시의회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축하 화분 전달받아

의회에 의정모니터링 보고서 제출…20여분간 총평과 소감 청취

'2019행정사무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세종특별자치 시의회(의장 서금택)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연기·장군·연 서)이 6월 13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로부터 축하 화분 을 전달 받았다.

이날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은 의정모니터링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 장의 집무실을 찾았다. 차 위원장은 시민단체 관계자들로부 터 축하 화분을 건네받은 후 2019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대한 총평과 소감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한 시민은 "이번 행감에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가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었다"며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은 물론, 지적사항에 대해 간결하게 대안도 제시해 시민평가단 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 시민 모니터링단으로부터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데 대해 기뻐하면서도 소속 위원들의 노력 과 배려에 고마움을 표했다.

차 위원장은 "미흡하고 부족한 저에게 영예로운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행감 기간 동안 산건위 모든 위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에게 양보하는 상호 존중이 이번 회기 동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라고 밝혔다.

한편, 2019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이 태환 의원과 행정복지위원회 박성수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세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장욱진화백생가와 종촌종합복지센터 등 5개소 찾아 문제점 파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5월 21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문화 · 복지 · 문화재 등 소관 시설의 운영 사항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내 5개소를 방문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 위원들은 장욱진 화백 문화브랜드화 사업의 진행 사항을 확인 · 점검하고자 장욱진 화백 생가를 방문했다.

이어 행복위 위원들은 연서면 쵸코렛어린이집을 방문해 면 지역 어린이집의 애로사항을 보고 ·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세종형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합치는 것)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위원들은 전통사찰 내 문화재 보존 · 관리에 대한 문제점 등을 청취하기 위해 영평사를 찾은 후,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육아

종합지원센터 등 입주시설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종촌종합복지센터를 방문했다.

끝으로 행복위는 세종시민의 치안, 교통, 안전을 위한 다목적 CCTV를 종합 관제하는 도시통합정보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운영사항 등을 점검했다.

채평석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위탁시설 등 현장 종 사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으로 시 민들이 행복하게 거주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 다"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현장 방문과 자료 조사 등을 토대로 5월 22일부터 5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치원소방서 등 현장방문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시민안전국 소방본부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5월 21일 조치원소방서 및 합강캠핑장 현장방문에 이어 시민안전국 소관을 시작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교육안전위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날 오전 조치원 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한 데 이어 세종시 연기면에 위치한 합강캠핑장에서 운영 상황과 애로사 항 등을 청취했다.

현장 방문 이후 위원들은 오후 2시부터 세종시청 시민안전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병헌 위원장은 "올해 민원콜센터 현장방문 시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아직도 바뀌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민원처리 건수가 2017년 16만건, 2018년 17만건으로 매우 큰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는데 콜센터의 인력은 10명에 불과해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조속한 인력증원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 통합방위조례에서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직무대행 절차를 조례상에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윤형권 부위원장은 "세종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재난관리과장 과 재난상황실장이 6개월 중 3개월이나 출장을 간 것으로 드

러났다"면서 "시 재 난관리가 매우 위태 하다"며 부실한 복 무관리 실태를 지적 했다. 이어 윤 부위원 장은 "만약 6월에 국 가물관리위원회에서 세종보 해체로 결정 되면, 시는 그에 대한 (시민들의 세종보 해 체 찬반 여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채성 위원은 "관내 건물 승강기가 5,625개인데 승강기의 경우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사전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안전 점검 및 품질 관리를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손현옥 위원은 "자동차 등록 사업소가 없어 자동차 등록을 하려 할 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민원현안 업무로 그 중요성이 큰 만큼 자동차 등록 사업소를 세종시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희 위원은 "세종보의 해체 문제와 관련해 세종보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용역 실시를 촉구했다. 박 위원은 "세종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전국 12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민원관련 제도 및 정책개선을 통해 발급률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상병한 교육안전위원장은 "올해로 행정사무감사 2년차에 접어드는데 교육안전위로 개편되면서 기존 교육청 소관에다 시청 소관 업무인 안전과 소방까지 광범위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더세밀하고 꼼꼼히 시정을 살펴 시민이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제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5월 20일

~ 6월25일)동안 5월 21일 시민안전국, 5월 22일 소방본부, 5월 23·24일, 31일에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실시

장애인 저상버스 및 도시계획도로, 고운동 하수관거 점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업 현장을 직접 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5월 21일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일정은 장애인 저상버스 탑승 체험, 스마트그린 산단·서창 도시계획도로·번암 도시계획도로 현장 점검, 고운동 공동 주택 하수관거 점검 및 호수공원 수목관리 상태 점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 방문한 의원들은 현황 청취 후 시설 상태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 지적과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손인수 위원은 저상버스 운행 현장에서 "장애인이 버스 이용 시 버스유압기 작동이 안 되고 승하차 받침이 짧아 경사가 높 은 상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이 우려된다"며 "기사 교 육과 승하차 시설 보강 등을 통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 록 조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재현 위원은 스마트그린 산단 및 전의첨단 현장에서 "산단 조성 시 채용 및 수용주민 대책 등에 지역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개미고개 삼거리 도로선형이 덤 프 등 대형차량 교행 시 타 차량에게 위험을 주는 상황이므로 빠르게 개선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태환 위원은 서창 도시계획도로 현장에서 "현재 사유지 소유 자가 도로를 막고 있어 주민 이용불편 해소 및 상권 보호를 위 해 빠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하고, 개설 지연 시 대안 도 로를 마련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환경 정비도 병행해 주민들 생활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정비 해줄 것"을 요 청했다.

김원식 위원은 번암 도시계획도로 현장에서 "현재 개설중인 도 시계획도로와 접하는 신설 예정 연결도로 종단경사가 급하게 계획되어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현재 개설 중인



도시계획도로 지반고를 낮춰 경사도를 줄이는 방안 등 합리적 인 대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차성호 위원장은 고운동 공동주택 현장에서 "공동 주택 우·오수관로 오접 여부 현장 연막 시험 결과 일부 관로 에서 오접 부분이 발생된 바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는 신도심 도로 및 호수공원 내 수목 식재된 현장에서 수목 굴착 시험을 끝으로 현장방문을 마무리했다. 위원들은 집행부에 "신도심 내 식재된 수목 중 고사되거나 성장이 멈춘수목 현장굴착 결과 뿌리부에 고무ㆍ철사 등이 묶인 채로 식재돼 있어 뿌리 활착이 안 된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초 시공자인 나 명확한 논의를 통해 조치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3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현장 점검

공원 체육시설 및 가로수 · 공동구 관리 현황 · BRT 도로 파손 등 파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차성호, 이하 공공특위)는 4월 10일 시민참여단과 함께 연내 LH로부터 인수 예정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제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공공특위 차성호 위원장을 비롯해 안찬영 · 박성수 · 이윤희 · 손인수 위원 등이 참석했다. 공공특위 위원들과 시민참여단은 점검 대상지인 S-2 부엉뜰 및 1생활권 고운뜰 근린공원, 5생활권 공동구 3구간, 4 생활권 자동크린넷 집하장, 4생활권 BRT도로 등을 순회하며 공원 내 체육시설 및 가로수 관리 상태, 공동구 운영 현황 전반 및 BRT 도로 파손 등에 대해 상세히 파악했다.

차성호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이 함께 참여하여 시민 시각을 담아내는 의미 있는 점검이었다"면서 "제3기 공공특위 활동을 통해 인수시설 미흡사항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에 힘 보래

서금택 의장 "이재민들의 상처 하루빨리 치유되길 염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4월 26일 의장실에서 세종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탁과 함께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물품(수건 120여장)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을 비롯해 안찬영·이영세 제1·2부의장과 박성수·노종용·손인수 의원, 세종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영섭 지회장이 참석했다.

서 의장은 전달식에서 "옛 부터 우리 한민족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서로 상부상조하여 극복해온 저력이 있다"면서 "산불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강원도 이재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일상생활로 복귀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4월 10일에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들과 함께 강원도의회를 방문해 산불 피해복구 성금을 전달한 데 이어, 이재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재차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관내 건설·자재·레미콘 생산업체 간담회

업체 관계자들 "건설 경기 침체 우려…관내 업체 가점 등으로 계약 우선권 줘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최초로 세종시의회와 시 관계자, 관내 건설ㆍ자재ㆍ레미콘 업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 이하 산건위)는 4월 23일 오전 10시 '건설ㆍ자재ㆍ레미콘 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건설 관련 업계의 현장 목소리와 기업체 대표들의 의견 청취뿐 아니라 기업 운영상 애로사항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산건위 차성호 위원장을 비롯해 유철규 부위원 장, 손인수·이태환·김원식 위원은 물론, 박성수·박용희의원과 시청·교육청·LH 및 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건설 자재업·레미콘 생산업체 대표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하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관내 업체의 애로사항들을 잘 청취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건설 관련 업체 대표들은 관내 건설 경기의 급격한 침체 를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세종시의 공사 발주 물량 급감 은 물론, 관외 업체의 사업 수주 비율이 높은 데 대한 개선방 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업체 대표는 "1년에 상당액을 법인세로 내는데 세종시 관급 공사에 본사 물품을 공급한 적이 단한 차례도 없었다"며 "타 지역에서 돈 벌어서 세종시에 세금만 납부하는 것 같아회사 이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저희 역시 관내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기조로 일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업 및 계약부서에서는 규격에 맞는 제품이나 장애인 · 여성 기업 등 가점을 받은 기업들을 위주로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답했다.

차성호 위원장은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내부적으로 관계 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대외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안 역시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건위 위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설 관련 관내 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업체들과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종시의회, 농·축산업 선진화 연구모임 간담회 개최

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등 세종시 축산 냄새 저감 방안 모색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농·축산업 선진화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재현)은 4월 2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종시 축산농가 냄새 저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채평석·차성호 의원, 시 관계자와 윤석명 전국한우협회 세종시지 부장, 윤성진 연서면 농업경영인회장이 참석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특히 양돈 농가 밀집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해서는 액비순환시스템, 밀폐 발효기 등의 시설 설치가 필요하지만, 높은 비용 문제로 개별 농가 단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시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인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 신청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자부담 비용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표의원인 이재현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회원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농·축산업 선진화 연구모임」은 오는 7~8월중 축산 냄새 저감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관내·외현장을 방문하여 시정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세종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간담회 개최

세종시 보육정책 현황 토론 및 타시도 보육사업 특수시책 비교·검토 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세종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박성수 의원)'은 4월 19일 행정복지위원 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개 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수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이영세 의원, 손인수 의원, 이윤희 의원, 임이랑(전의산단어린이집 원장), 허혜진(세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회원 7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보육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토론과 타시·도 보육사업 특수시책 비교·검토, 보육시설 현장방문일정 등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허혜진 세종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보육

환경 질적 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 컨설팅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다.

박성수 대표의원은 간담회에서 "세종시 만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보육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세종형 유치 원·어린이집 연계운영 방안 연구용역 수행 시 세종시 여건 분석을 통한 세종형 유보통합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 다.

한편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은 인근 시·군 농촌지역의 특화된 보육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현장방문 일정을 7월 10일로 정하고, 유형과 기능을 고려해 대상 보육시설을 선정하기로 했다.



세종시의회, 시민 제보로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높였다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행정의 위법 및 부당 · 예산낭비사례 등 접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가 시민 제보를 통해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세종시의회는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자체 홈페이지와 방문 및 우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받았다. 세종시의회는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시정과 교육행정의 부조리와 위법성, 부당성 등을 다각도로 조사 · 분석해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 파악과 현장 점검, 개선방안 등을 요구했다.

실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으로 시민들에게 제보를 받았다는 점이 높이 살만 하다'며 '행감 중에 제보 받은 내용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서금택 의장은 "제56회 정례회 회기 중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민주주의의 꽃으로 집행부를 균형 있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고유의 역할"이라면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시민주권자치와 의회 민주주의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민의를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대상으로는 ▲ 행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항 ▲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 보조금 부당 수 령 및 예산당비 사례 ▲ 기타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 제보 등은 제외됐다.

세종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참여 학생들 호평

4월 15~19일까지 미르초등학교 학생 164명 대상으로 시의회 역할과 기능 교육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의 회교실이 시의회를 대표하는 교육 프로그램으 로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4월 16일 본회의장에서 한솔동 미르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

이날 미르초등학교 4학년 46명이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했다. 안찬영 부의장이 의회를 대표해 미르초등학교 학생들을 맞이했다. 안찬 영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청소년 의회교실은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물론, 대의 민주주의 의 개념을 체험을 통해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 으로 앞으로 민주주의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에 게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 · 응답 시간에서 미르초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궁금한 점들을 물었다. 안 부의장은 시의회의 구성과 기능, 지방선거의 개념 등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상세히 답변했다.

또 학생들이 직접 정책 대안을 제안해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아파트 단지 내 흡연 부스 설치등 학생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다채로운 의견들





이 나왔다. 이에 안 부의장은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의 제안에 대한 시책 추진 상황과 해결책 등을 언급했다.

안 부의장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청소년 의회교실이 더욱 풍성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면서 "시민 모두에게 열린 의회이자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알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제출한 제안서는 안찬영 부의장에게 전달됐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한 학생은 "시의회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친구들에게 의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줄 수 있게 돼 뿌듯하다"는 소감을 남겼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고운초등학교 학생 175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한 데 이어 4월 15일 부터 19일까지 미르초등학교 학생 16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세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세종시의회,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논의

양 의회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이 될 중요한 시기' 강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4월 16일 경기도의회 지 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12인, 위원장 배수문)들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과 자치경찰제의 시범도입 현황 및 추진경과 등에 대해 청취하고 지방자치 발전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자치분 권 제도화의 원년이 될 중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실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특별자 치시법' 개정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인' 은 국회에 회부돼 있다. 또 양 의회는 자치분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균형발전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경기도의원들에게 '대통령 세종집 무실 설치' 국민청원에도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또 양 의회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우호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의원들 역시 세종시의회의 제안에 깊은 공감의 뜻을 전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화답했다.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은 "우리시의회를 방문한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좋은 의 견을 교환하고 소통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세종 특별자치시가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범적인 자치분권 선 도도시로 발전해서 지방분권의 가치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4월 5일 3층 의정실에서 지난 제55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 위원은 시의회 윤형권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손현옥 의원, 문수원 회계사, 주홍진 세무사, 시 정과 교육행정 분야에 공직 경험이 있는 고병학, 황금성, 김종성 씨 등 총 7명이다.

결산검사는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와 명시·사고이 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게 된다.

서금택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집행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2018회계연도 예산이 당 초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하 였다.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된 윤형권 의원은 "세종시의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세심히 검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결산검사 결과는 5월에 개최된 제56회 세종특별자 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승인됐다. **30** 세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mathcal{O}$

세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

3일간 제주도서 실무 역량 강화 교육과 4 · 3 평화공원 등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의원 전원(18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35명을 대상으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3일간 오션스위츠 제주호텔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및 조례안 심사기법 등 실무교육 뿐 아니라 전문적 소양과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의정활동 사례별 교육도 받았다.

또 이번 연수는 올해 첫 정례회 회기를 앞두고 의원들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 간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5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제56회 정례회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이번 의정연수를 추진했다"면서 "회기 중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정책대안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제주도민들의 아픈 역사가 깃든 4·3 평화공원 기념관을 방문해 4·3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역사와 첨단이 공존하는 '세종시의 미래'

세종특별자치시는 당초 행정수도로 조성된 계획도시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등 국가행정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되면서 특화 도시의 강점이 극대화됐다. 도시의 인프라는 급속도로 잘 갖춰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세종시에 채울 이야기가 필요해졌다. 이른 바 다채로운 도시가 지니고 있어야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도시의 외양은 아파트와 빌딩 숲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도시의 스펙트럼은 역사를 간직한 유적지는 물론, 전통가옥과 민속박물관 등 전통문화의 가치를 더해 확장될 수있다. 지난해 세계행정도시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터키의 행정수도 앙카라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앙카라시는 1923년 터키공화국 출범과 함께 새로운 수도로 발전해왔다. 이곳의 특징은 신구의 조화다. 앙카라시에는 선사시대와 고대, 비잔틴 시대 등 유서 깊은 유적은 물론, 도시계획에 기초한 국회의사당과 관공서, 오페라하우스 등 근대적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세종시는 올해로 출범 7년차를 맞았다. 이른 바 '만들어나가는 도시'인 만큼 도시 인프라 구축을 넘어선 고유의 색을 덧입히는데 관심을 가질 시기다. 도시 형성의 관점에서 고유의 색이란 오랜 시간이 빚어낸 지역 역사와 문화적 산물의 총체다. 세종시 출범 당시 조치원읍을 포함한 연기군 전역을 중심으로 공주시 및 충북 청원군 일부가 편입됐다. 그 가운데 조치원은 두 가지 관점에서 도시의 신구 조화를 이끌고 있다. 하나는 조치원의 역사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1428년 세종임금의 특명으로 허만석현감이 현재 평리 부근에 제방을 축조해 1,000여경의 농경지에 물을 댔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 특히 조치원이라는 세 글자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영조46년(1770년) 〈동국문헌비고〉 향시편에 조치원장을 4일과 9일로 기록하면서부터다. 이 기록에 따르면 내년이면 조치원장이 개설 250주년을 맞게 된다. 사료에서 비롯된 조치원장 개설 250주년 기념행사는 세종시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두 번째는 조치원이 읍・면과 동 지역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역이라는 점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비와 시비 36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이미지를 벗고 전통과 현대의 공존은 물론, 경제 효과 창출도 기대된다. 조치원 배와 복숭아와 같은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문화축제 역시 농가 소득 향상과 도시 홍보라는 1석 2조의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원의 사례가 다른 읍·면 지역에도 확산돼 시의 고른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시의 위상은 한층 공고해질 것이다. 행정수도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자체 경쟁력인 자족도시의 기능에도 충실해야 한다. 역사와 문화, 첨단이 어우러진 세종시의 장밋빛 미래는 지금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서 금 택





시민주권 실현한 세종시의회 2019행정사무감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오는 7월 2일이면 개원 1주년을 맞는다. 그간 세종시의회는 의정 운영의 내실과 안정화를 꾀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개원 1주년을 앞두고 진행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제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들로부터 주목받았던 몇 가지 사안들을 정리해봤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집행부의 조례 공포 오류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졌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노종용 의원이 지적한 내용으로 세종시에서 공포한 조례가 세종시의회 의결 내용과 다르다는 게 핵심이다. 원문과 다른 내용들이 누락되거나 삽입되어 조례 제정 의도와 다르게 공포되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조례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 사업들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조례 공포 오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전수 조사를 계기로 조례 공포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 이런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윤리 기준과 공무국외활동 내실을 강화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최근에도 일부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의를 대변해 각종 정책들을 의결해야 하는 의원들은 높은 수준의 청렴함과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그동안 시민사회로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구성은 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이후 꾸준히 논의돼왔던 사안 중 하나다. 다만, 윤리특위는 유사시 가동되기 때문에 의원들의 비위와 비리 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논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지난 제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윤리특위 출범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지만, 윤리특위는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 주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윤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원 공무국외활동 전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개정조례안에는 심사위원단을 현행 7명에서 민간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늘리고,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출장계획서를 출국일 40일 전 제출하고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출장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 내역이 확인될 경우 비용반환 규정을 마련해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그밖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 형식적인 안전 신문고 처리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전도 ▲ 유사시 대비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 ▲ 현장 대응 소방공무원 직급 상향 ▲ 건축 허가 시 관 주도로 지원책 강구 ▲ 차별화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책 마련 ▲ 세종시 감염병 대응체계 관리 부실 등 다양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원들의 남다른 각오와 열의가 돋보였다. 실제로 세종시민 44명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링단이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료 열람과 안정적인 모니터링 환경 제공 측면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타 시의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전에 일정 기간 동안 시민제보를 받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세종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호평 받았다. 대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의원들의 행감 준비가 잘 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세종시의회의 의정 슬로건처럼 세종시민의 꿈을 실천하는 의회가되었기를 바란다.





시 기록물 관리하는 '세종기록원' 설립 제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태환 의원(조치원 신안· 서창·봉산·신흥)은 세종기록원 설립을 통해 세종시 기록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태환 의원이 제5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기록저장소인 아카이브(archive)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십에서 수백년 전부터 도시 차원의 아카이브가 구축돼있다.

이 의원은 "공공기록물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광역시·도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자체 기록 원 의무화 10년이 지난 만큼 세종시의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실천이 이뤄져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 5월 서울기록원을 정식 개원하고 총 130만여점을 영구 보관할 수 있는 기록물 관리 공간을 운영 중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의 자서전 제작 지원 사업을 제 안했다. 실제 서울시 관악구의 '어르신 자서전 출간 사업'과 세종시 장군면 작은 도서관의 '그림책 자서전 만들기' 등 다양 한 형태로 해당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누군가의 지식과 경험을 기록해 후대에 세종의 삶을 알리는 새로운 문화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며 "개인사 속에 스며있는 시대상과 생활상을 조명하면 지역 사료로서 가치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마을지(紙) 제작과 관내 학생 연계 작업을 언급했다. 마을지 제작을 통해 마을의 주민자치를 스스로 기록하게 하고 세대 간 통합을 이끌 수 있도록 자서전과 마을지 제작 과정에 관내 학생들을 참여시키자는 게 제안의 요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세종기록화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역사 전 승을 위한 소통과 공유,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통한 기록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세종기록원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6

기록저장소인 아카이브 구축 언급… 마을지와 어르신 자서전 제작 등 제안

"

5분자유발언 세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국립아리랑박물관 유치 촉구

66

40여년간 수집한 아리랑 관련 자료 5천여점 이상 확보 가능



"국립아리랑박물관이 부강면에 건립된다면 한겨레아리랑연합 회가 40여년간 수집한 아리랑 관련 자료를 기증하겠다는 의지 를 최근 본 의원에게 밝혔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연동·부강·금남)은 제5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에 국립아리랑박물관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채평석 위원장은 서두에서 "아리랑은 6 · 25전쟁과 같은 수난 때마다 민족을 단결시키고 남북회담 등 국가 주요행사 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사는 해외동포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 을 했다"며 우리 민족에게 갖는 아리랑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 했다. 이어 채 위원장은 "한겨레의 얼과 한, 멋이 깃든 우리 대표 유산인 아리랑은 세계 속에서 한국과 한민족을 상징하는 문화코드가 되었다"며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향유·전승해야 할 우리나라 대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채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정부가 발표한 아리 랑무형유산센터 건립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시 정부는 지역별 아리랑을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는 아리랑무형유산센터 건립 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채 위원장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 세종시에 국립 아리랑 박물관 유치를 강력하게 제안한다"면서 "한겨레아리랑연합회 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는 관련 자료는 5,000점 이상으로 금전적 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채 위원장은 "세종시가 문화, 체육 등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을 신설한 만큼 국립아리랑박물관유치에 적극 나서서 문화 콘텐츠 확대는 물론, 아리랑의 새로운문화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영농폐기물 수거율 2%대에 그쳐… 수거집중기간과 공통집하장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 시급

66

공동집하장에 방치된 영농페기물들이 토양과 수질 오염 등의 워인이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윤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영농폐기물 수거는 물론, 공동집하장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윤희 의원은 5월 20일 열린 제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강한 농촌을 위한 영농폐기물 관리 개선방안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먼저 이 의원은 도심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 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농촌 지역의 경우 영농폐기물 발생원이 넓게 산재돼 있어 보건환경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총 30곳의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을 방문해보니 관리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영농폐기물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 농촌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영농폐기물수거율은 2.7%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공동집하장에 방치된 영농폐기물들이 토양과 수질 오염 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이의원은 "대부분의 공동집하장이 소하천과 연결된 부분이 많아 살충제나 농약봉지의 잔여물이 땅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의 위협 요소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 수거집중기간에 인력을 투입해 수거업체에 바로 인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요청 ▲ 공동집하장을 관리하는 이장 · 소유주를 대상으로 배출 요령 교육과 매뉴얼 제공 및 배출요령 게시판 부착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담당자를 지정해 분리 배출 지속 모니터링과 폐기물 방치 방지책 마련 등 세 가지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타 지자체는 자연분해 필름 등 친환경 영농자재 보급 확대와 수거경진대회 등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관계 공무원과 세종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5분자유발언 세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행정력과 예산 절감하려면 공동주택 정보공유 시스템 도입해야

66

문서 행정이 체계화되어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도 절감될 것



공동주택 정보공유 시스템 도입으로 세종시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손인수 의원은 5월 20일 제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정보공유 시스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손인수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세종시 공동주택 비율은 78.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우리 시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로 발송하는 종이 문서는 작년 한해 6,566건으로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손 의원은 다량의 종이 문서가 발송되면서 문서 유지관리 및 보관에 따른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의원은 공동주택 정보 공유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예산과 자원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인천 서구의 경우 3만 2천여건의 종이문서 발송으로 인한 예산과 자원을 절감했고 문서 전달 기간도 3일에서 1일로 단축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았다.

또 손 의원은 "문서 행정이 체계화되어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도 절감될 것" 이라고 말했다. 중요 문서의 고의적 훼손과 분실 방지는 물론, 문서를 찾는 데 필요한 인건비 등을 줄임으로써 관리비를 낮출 수 있다는 게 손 의원의 주장이다.

끝으로 손 의원은 "문서 전자화로 도시 데이터를 축적하고 향후 빅데이터로 통합 관리해 나간다면 스마트 시티로 가는 초석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조치원 전통시장 250주년 기념행사 개최해야



조치원 전통시장 개설 250주년을 맞이해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



"조치원 전통시장 개설 250주년을 맞이해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5월 20일 열린 제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조치원 전통시장 개설 25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금택 의장은 조치원 전통시장의 역사와 의미를 언급하며 250주년 기념행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서 의장은 "1770년 〈동국문헌비고〉 향시편에 청주군내 조치원장은 4일과 9일에 개시한다는 기록이 있다"며 "2020년 조치원 전통시장 250주년 기념행사는 조치원 주민만의 행사가 아니라 과거 조치원장이 그랬듯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세종시민 전체의 교류와 화합의 문화축제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서 의장은 조치원 전통시장 25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국내외에 세종시를 알리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250주년 기념행사에 '행정수도 세종' 브랜드와 지역 특색을 잘 녹여낸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세종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끝으로 서 의장은 "관 주도가 아닌 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 단계부터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어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5분자유발언 제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시민 문화예술 수준에 걸맞은 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시급

66

시민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세종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에 걸맞은 세종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제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문화예술은 어떤 도시기반보다 시민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중요한 인프라지만 우리 시의 기반 구축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상병헌 의원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 조사 자료를 토대로 세종시의 문화균형지수가 문화공급과 시민수요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밝혔다.

먼저 상 의원은 2021년 개관 예정인 세종아트센터가 당초계획보다 1,071석 규모로 축소된 건립 규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소공연장의 경우 인근 도시인 대전, 청주 등과 비교해도 2/3 규모에 그쳐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과 걸맞지 않다는 게 상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상 의원은 ▲ 생활권별 200~300석 규모의 소규모 공연장 건립 ▲오케스트라, 합창단, 극단 등 세종시립예술단 창단 ▲국제 규모의 차별화된 문화행사 개발을 제안했다.

상 의원은 "시민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 하다"면서 "프랑스의 아비뇽 축제와 신촌 물총축제와 같이 세종시도 지역 정체성 을 가진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5 · 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계기 교육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은 5월 20일 제56회 정례회 제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과 계기 교육을 촉구했다.

윤형권 의원은 "과거 이승만 정권 때 반민특위를 해체하여 친일파에게 권력을 쥐어준 결과 5·16쿠데타 및 5·18광주시민학살 등 헌법을 유린한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며 "이와 같은 사건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제때에 청산하지 못해서일어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국립 광주 민주화운동 묘역에 안치되어 있는 고 김경철 씨와 고 최미애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5.18 당시 신군부에 의해 선량한 시민들이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5.18 광주시민 학살과 관련하여 최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집단 발포 직전 전두환의 광주방문 사실', '시신을 불 태워 없앴다는 증언',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했다'는 등의 만행이 저질러졌다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치인은 정의의 편에 서서 불의한 것에 대해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기 때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역사 바로알기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하다



문에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역사 바로알기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는 구성됐지만 위원 추천 문제로 정치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특별 진상조사 위원회를 즉각 가동할 것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계기 교육을 실시해 역사를 사실대로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더 이상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윤형권 의원은 5분 발언 중 5 · 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배경음으로 사용하여 본회의 장 분위기를 숙연케 했다.



노종용 의원

세종시 조례 공포 오류, 지방자치 본질 훼손

조례 공포 시스템 전면 개선과 관련자 감사 요구

미래지향적인 지방분권의 상징도시로 성장 중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책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 공포 오류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노종용 의원(도담)은 6월 25일 제5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한 세종시 조례 공포 오류의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노종용 의원은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은 전수조사 역시 본 의원의 자체 조사와 상이한 내용이 다수 발견돼 제3차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2차 전수조사 때 보다 94건 증가한 총 321건의 조례가 시의회 의결과 다르게 공포됐다"고 비판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공포된 조례 총 1,090건 중 321건에서 내용 누락과 임의 수정 등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특히 노 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제1차 조사, 제2차 전수조사, 제3차 추가조사 결과 역시 다르다"면서 현재 세종시 행정의 사후 검토나 문제 대처 기능이 제 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일부개정조례' 는 의결된 내용과 달리 '위탁 근거 규정'과 '공영자전거 사용료'가 삭제돼 공포 됐다. 즉, 법적 근거 없이 공영자전거 사용료와 임대료를 부과한 셈이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일부개정조례'역시 임대료 일부 기준이 누락되기도 했다.

심지어 의회 의결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 2015년 공포된 생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경우 의회 의결에는 없었던 '제5조에 따른 통합실무위원회 의장'과 '시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추가되고 각호의 순서가 임의로 변경됐다. 또한 노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에서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자격을 '19세 이상의 사람'에서 '사람'으로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면서 "어떤 권한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변경한 것입니까? 잘못 공포된 조례 내용을 보고 헷갈려했을 시민들의 혼선은 누가 책임져야합니까?"라고 연이어 반문했다.

노 의원은 이번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이춘희 세종시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노 의원은 "시가 조례 내용을 임의 변경하거나 삭제, 추가하여 의회 의결 권을 침해했다"면서 지방자치법의 본질을 심각히 훼손한 데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이번 오류는 집행부 나름대 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일부 조정하는 관례 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회 입법 권한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노 의원은 의결과 다르게 공포되거나 공포문과 다르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321건의 조례에 대한 명확한 조치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법령 사이트에 잘못 등재된 조례는 이달 중으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수정하고 입법 취지 및 내용 변경이 있는 조례는 제57회 임시회에 맞춰 의회와 협의 후개정 추진 등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노 의원은 조례규칙 심의회 의장인 이춘희 시장이 심의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채로 조례에서 규정한 조례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원칙적으로 시장이 조례규칙 심의회를 주 재해야 하지만 일정 관계상 부시장이 회의를 대신 주재해왔다"면서 "앞으로는 가급적 제가 직접 심의회를 운영하고 서면 대신 대면 심의에 의해서 조례규칙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의회의 의결로써 조례안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고의성이 있는 해당 업무 관련자들의 징계 등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감사위원회에감사를 요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 문책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 시 공직자 모두가 각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종용 의원은 세종시 공 포 조례 오류에 대한 재발 방지 대 책으로 전문인력 확충과 검토 프 로그램 도입, 시 차원의 명확한 기 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차성호 의원

세종시 밀폐형 보온시설 라돈 검출 대책마련 촉구

밀폐형 보온시설에서 라돈 기준치 15배 초과 검출돼 대책 마련 요구

Activation of the control of the con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은 5월 20일 제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관내 밀폐형 보온시설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라돈가스 검 출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민 건강을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차성호 위원장은 지난 3월 제55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 소규모 마을 상수도 시설 내에 라돈 관리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 이후 세종시 밀폐형 보온시설을 대상으로 라돈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 148Bq/L(베크렐)을 15배 초과한 2,334Bq/L의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라돈 침대 검출량 620Bq/L에 비하면 4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이날 차 위원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라돈 검출 조사는 관내 밀폐시설 2개소에 라돈측정기를 설치해 이뤄졌다. 특히 라돈 기준치 초 괴의 원인에 대해서는 겨울철 밀폐시설 내부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차 위원장은 "지하수 라돈검사 의뢰 결과 기준치(148Bq/L) 이하인 97.2Bq/L이 검출되었으나, 밀폐된 시설 내에서 라돈가스가 포집되어 라돈농도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사를 통해 밀폐 공간을 환기하면, 라돈이 기준치이하로 급속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차 위원장은 "주·야간 영하의 날씨가 유지되는 겨울철 90일간에는 밀폐시설을 환기할 수 없어 내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차 위원장은 밀폐된 시설물 내에서 검출되는 라돈가스 해소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문제 해 결방안으로 환절기 작업시간 수시 환기는 물론, 겨울철에는 열교환 환기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차 위원장은 "밀폐형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라돈이 포집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 며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시 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차 위원장은 "국민이 라돈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 워져서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 다"고 말했다.

의회운영위원회

#01

2019년 행정사무감사

1 제55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했다.

2 2019년 행정사무감사

제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3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6월 17일 제1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02

주요발언

이대현 위원장 시의회 홈페이지에 시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코너인 '의회에 바란다'에 등록되어 있는 일부 민원의 답변 처리 기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신속한 민원 회신이 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이윤희 부위원장 의회 기념품 구입 목록 중 유통기한이 짧은 화장품을 언급하며 물품 구입 시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 데 이어 수화 통역사가 의회 용어를 통역함에 있어 어려움은 없는지, 방음에는 문제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회에서 사용 중인 신용카드의 연체료 발생이 여러 건임을 지적하며 결제 대금 지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

안찬영 위원 의원 한분 한분이 시민이 선출한 입법 기관임을 강조하며 중요사항을 결정 시 의원 간 협의 · 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사무처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일정한 규칙으로 '자료 전달' 및 동향 등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사무처와 의원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유철규 위원 의회 청사 내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조실 진동 · 소음 문제를 연내 해결하여 줄 것을 촉구한 데 이어 의원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개최를 건의하며 사전에 강사를 희망하는 의원이 있는지 조사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영세 위원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이 일부 학교에 편중되어 있음을 안 타까워하며 참여 학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회 및 의원 개인 홈페이지 활용 가 치를 제고해줄 것을 당부하며 홈페이지에 정책 간담회, 연구모임 등 의정 활동 내용 게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03

예산결산 예비심사

이재현 위원장은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 예비심사에서 4개 성과지표 중 2개 지표가 미달성되었다고 지적하며, 성과 중심으로 지방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분석 등을 통해 신중을 기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회운영위는 세종시 예산결산 심사와 관련된 2개 안건을 원안 가결 했다. 이재현 위원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예산안 심의 시 예산결산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간 협의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 간 혼선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6월 30일로 종료되는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어 제2차 예결위가 구성될 방침이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시의회 홈페이지 민원처리 기한 준수 등 16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노종용 의원이 제출한 긴급현안질문의 건은 가결됐다.

이재현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위원들이 제안한 개선사항에 대해선 조속한 조치와 지속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현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



안찬영 위원



유철규 위원



윤형권 위원



이영세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01

2019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는 5월 22일 기획조정실, 23일 자치분권문화국 및 읍 · 면 · 동, 24일 보건복지국 및 보건소, 31일 대변인 · 운영지원과 · 대외협력담당관 · 감사위원회 · 세종시문화재단 · 세종시복지재단 · 인재육성평 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6월 3일에는 조례 공포 오류로 감사를 완료하지 못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했다.

#02

주요발언

채평석 위원장 시 홈페이지의 각종 정보가 시의적절하게 업데이트 되지 못한 부분은 정책기획관 행정사무 감사 시에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으로, 시 홈페이지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실적이 성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윤희 부위원장 시정모니터단의 모니터 사항이 정책에 반영·개선되었는지 질의하며, 시정모니터단의 활동사항을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사항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관 운영관리 실태와 집행부의 개선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종용 위원 세종시 홈페이지의 맛집 코너와 읍·면·동 정보의 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며, 세종시의 홈페이지가 의미하는 무게감에 비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지적을 할 때만 수정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응이 아닌 총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성수 위원 출산장려금 지원이 출산율 증가에 개선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출산율을 높인 독일의 정책과 서울 서초구의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정책 등을 사례로 설명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과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 등 세종시의 다양한 출산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안찬명 위원 지역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세종시의 생활권별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상권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집행부가 어느 정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세종시가 지역 영세업체에게 마중물이 될 경제지원 정책을 마련해주길 당부했다.

이영세 위원 체육계의 선수와 임원·지도자간 성폭력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종목 내 여자선수가 30% 이상인 종목의 경우 여성 지도자나 코치를 위촉 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당부했다.



#03

조례안과 동의안 · 변경안 & 세입 ·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등 심사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2건, 변경안 1건, 6월 11일 제2차 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과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12일 제3차 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심사했다.



채평석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



노종용 위원



박성수 위원



안찬영 위원



이영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01

2019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22일 경제산업국, 23일 건설교통국, 24일 환경녹지국 및 농업정책보좌관, 31일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및 세종도시교통공사를 대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2일 제3차 회의에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02

주요발언

유철규 부위원장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 시 실제로 거주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참여 비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하였으며, 보람동 솔바람공원 편의시설 중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원식 위원 조치원읍 신흥리 소재 창업키움센터 및 SB플라자(장영실과학기술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를 지적하며, 금액 환수 등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축 인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관련 행정처리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주문했다.

손인수 위원 전국 최고 수준의 세종시 상가 공실률 문제를 지적하며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구도심 지역의 상권 활성화 방안 등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신규 산업단지 분양에만 치중하지 말고 기존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고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이 대한 위원 전동면 벤처밸리 산업단지 및 소정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차질 없는 산업단지 조성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발생한 이주민들에게 맞춤형 이주대책을 적기에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ぼ환 위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업종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지원내용을 다각화 할 필요 성을 제기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조치원읍을 인구 10만명이 거주하는 세종시 경제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달성목표 기한이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으나 오히려 조치원읍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03

조례안과 동의안 · 변경안 &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등 심사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안 2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 획안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한 데 이어, 6월 11일 제2차 회의에서 경제산업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6월 12일 제3차 회의에서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차성호 위원장



유철규 부위원장



김원식 위원



손인수 위원



이재현 위원



이태환 위원

교육안전위원회

#0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교육안전위원회는 5월 21일 시민안전국, 22일 조치원소방서와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세종본부 소관, 23일 교육청과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31일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시설지원사 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02

주요발언

상병한 위원장 (고교 배정 오류와 관련된) 학부모들의 소송 제기 배경은 교육행정을 미숙하게 한 교육청의 잘못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포함한 학부모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올해 장학관 승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인사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형권 부위원장 세종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재난관리과장과 재난상황실장이 6개월 중 3개월이나 출장을 간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시 재난관리가 매우 위태하다며 부실한 복무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만약 6월에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세종보 해체로 결정되면, 시는 그에 대한(시민들의 세종보 해체 찬반 여론) 대안을 내놓아야한다고 주문했다.

임차성 위원 관내 건물 승강기가 5,625개인데 승강기의 경우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사전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안전 점검 및 품질 관리를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소방공무원 체력평가 미실시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방공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약장의 종류와 착용 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주문했다.

손현목 위원 자동차 등록 사업소가 없어 자동차 등록을 하려 할 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민원현안 업무로 그 중요성이 큰 만큼 자동차 등록 사업소를 세종시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희 위원 세종보의 해체 문제와 관련해 세종보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용역 실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전국 12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민원관련 제도 및 정책개선을 통해 발급률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03

조례안과 동의안 · 변경안 &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등 심사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4일 교육청과 5일 시민안전국 · 소방부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 사를 실시했다. 이어 10일부터 11일까지 상으로 '2019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 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양일간 심시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에서 5,127억 286만원 늘어난 1 조 3,476억 5,628만원이다.



상병헌 위원장



윤형권 부위원장



박용희 위원



손현옥 위원



임채성 위원

세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1

2018년도 결산 심사 & 2019년도 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식)는 제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2018회계 연도 시·교육청 결산'과 '2019년도 제1회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19일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는 한편, 심사 결과를 반영해 다음의 네 가지 종합 의견을 채택했다.

첫째,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미수납 증가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둘째, 사고 이월을 확정함에 있어 지출원인 행위 유무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셋째, 시의 부채 및 지급의무가 있는 재정 소요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한 재정운용 대책 수립 넷째, 사업 예산 규모를 정확히 예측해 예산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편성 예산의 불용 방지 대책 추진

예결위는 위원회 차원에서 제시한 종합 의견을 토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했다.

예결위는 20일 종합 심사에서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 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에서 5,217억 늘어난 1조 3,476억원으로 적정성과 효과성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 조정이 이뤄졌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급식연수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에 1,255억원을 감액했고, 유아교육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7천 9백만원 증액했다. 삭감액 중 다른 사업으로 편성되지 못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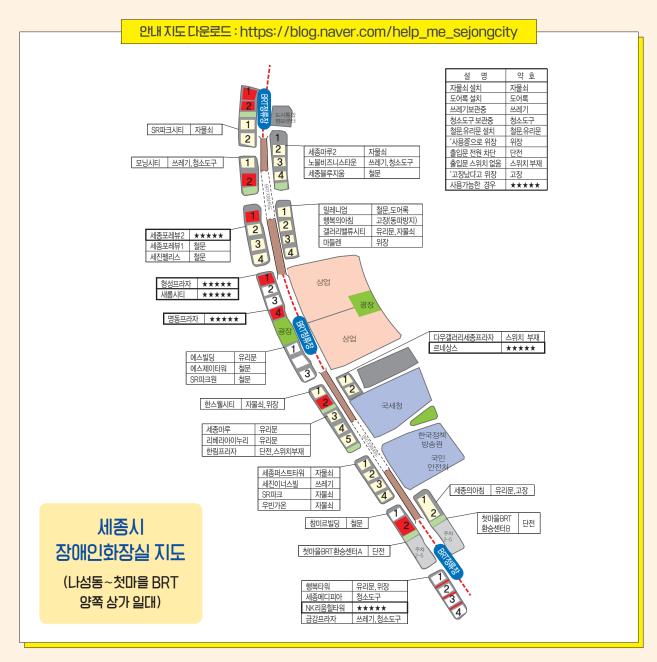
김원식 위원장은 "결산 종합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달라"며 "추가경정예산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한 예결위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3대 세종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들은 6월 30일자로 임기를 마쳤다.

시민기획 캠페인

'베리어 프리' 장애인 화장실 벽을 낮추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최재천 씨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화장실 안내 지도 제작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직접 조사한 세종시 내 장애인화장실 개방 여부와 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공개했다. '참여정신과 시민의식을 통해 시민주권자치를 완성해나간다'는 취지로 장애인화장실 안내 지도를 기획 연재한다.



주요만건 52 세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제56회 제1차 정례회

제56회 제1차 정례회는 5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37일간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1건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결의안 2건,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6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83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주요나용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변경, 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0일전까지 제출기한 확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계획서를 3일 이내 의회홈페이지 에 공개 등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노종용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 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박성수 의원 대표발의

주입내용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및 공공부문 일자 리 창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등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주요나용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학교 양치시설 운 영계획 수립 및 운영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채평석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충령탑의 위치 및 시설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이태환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 행 관리계획 수립 · 시행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어린이통학 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홍보교육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차성호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운행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제외를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박용희 의원 대표발의

주요나용 학부모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학부모회 조직(총회, 대의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박용희 의원 대표발의

주요나용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학대 예방 교육, 안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가결)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주요나용 세종특별자치시의원의 윤리 또는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 심사 (구성 목적), 구성 이원 9명 이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 결로 위원 선임, 활동기간 구성일로부터 2020.6.30.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가결)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주요나용 의장을 제외한 9명 이내(구성 인원), 2019.7.1.부터 ~ 2020.6.30.까지(활동 기간)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임채성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청소년단체 예산지원 및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청소년단체 활동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구축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7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임채성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 ·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

주요나용 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교육감의 혁신학교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세종특별자치시 혁신학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III 안 I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

주의내용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제3조),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

주요나용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제 3조), 취업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윤형권 의원 대표발의

주요나용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교육 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 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III 안 II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

주요나용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무인비행장치 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 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유철규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공회전 제한장소를 시 전역(면지역 제외)으로 확대하고 특별 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이태환 의원 대표발의

주요!!용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재해 ·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 · 보수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6조)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손인수 의원 대표발의

주의내용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 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구성, 검수 범위 등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 ·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Ⅲ 안 ♪ 차성호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소규모급수시설을 관리하는 사용자협의회의 요청으로 시 장에게 그 관리를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 우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손인수 의원 대표발의

주요나용 공동전기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공동전기료 지원방법 및 교부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이재현 의원 대표발의

주의내용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인 것을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기본 조례」로 변경함,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소비자·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등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 안 자 이태환 의원 대표발의

주입내용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어린이통학버스 안 전운행 관리계획 수립 · 시행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박성수 의원 대표발의

주입내용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및 공공부문 일자 리 창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등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제 안 자 노종용 의원 대표발의

주의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등

주요안건 세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54

그 외 처리 안건

⊸ 【잠제출 ∽

-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기결)
-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수정가결)
-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원안가결)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 ·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원안가결)

- 도시관리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결정(변경)(안)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안(원안가결)

⊸ 로테 내유교 ⊶

-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기금 결산 승인의 건(원안가결)
- 2019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안가결)
-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수정가결)



기 37일







의원 제출 조례안 **24**건







입법 정보

Sejong City Council

- 56 생활법령-솔로몬의 선택
- 61 주요 입법동향 최근 공포 법령 최근 국회 접수 주요법안 최근 입법 예고 주요 법령
- 67 법령 해석사례
- 74 최근 시행법령
- 76 다른 지방자치단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생활법령정보
 세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사내협력업체 직원, 파견근로자인가요?





공장은 일정 업무에 대해 사내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내협력회사는 나서민씨를 고용하여 A공장에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나서민씨는 A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이지만 2년만 파견근로자로 일하면 A공장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나서민씨는 2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A공장과 사내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A공장을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을 직접 고용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1) A공장이 공정별, 업무별로 외주화 대상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 직원과 A공장 직원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분되어 있었고, (2) A공장이 기간별 작업 총량을 할당하는 것을 넘어서 세부적인 작업방식까지 관리·통제하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3) 도급 대금은 기본적으로 생산량 또는 입·출고량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A공장이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근태관리 등 인사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는데요.

이런 경우, 나서민씨는 A공장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어 A공장에 직접 고용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A공장: 저희는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했을 뿐이므로, 나서민씨는 파견근로자가아니므로 나서민씨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사례의 경우 A공장)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위 사례에서는 나서민씨가 A공장에 파견되어 A 공장으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아 A공장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 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 피고가 공정별, 업무별로 외주화 대상을 선정하 였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 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 가 구분 가능했고, 그래서 이들 근로자들이 특정 공정 내에서 동일 업무를 혼재하여 수행하지 않 았다는 점, (2) 피고 공장 내 공정들 중 일부만 컨 베이어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반이 이루어지 고, 공정 사이의 운반 작업은 직원이 직접 차량 을 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가 기간별 작업 총량을 할당하는 것을 넘어서 세부 적인 작업방식까지 관리·통제하는 것이 확인되 지 않은 점, (3) 도급대금은 기본적으로 생산량 또는 입·출고량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근태관리 등 인사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보아, 그 밖에 피고의 시설점검 및 안전교육, 사내협력업 체 대표들이 과거 피고의 임·직원 출신인 점, 사 내협력업체의 영세성 등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음을 의심케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 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

과 판단을 같이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40406 판결).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종래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에서 근로자파견 근로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 제3자가 해 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②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 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 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 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 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 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 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 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 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한 이래, 일관된 대법원의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이 판결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사용자로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서민씨가 A공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평 결



1+1(원플러스원) 마트 행사 전단지는 과장광고일까?





얼마 전 이사를 한 나주부씨는 집들이 준비를 위해 남편과 장을 보러나섰습니다. 때마침 문 앞에 붙어 있는 마트 전단지들을 발견한 알뜰한 나주부씨는 꼼꼼하게 마트별 광고 전단지를 비교하였습니다. 나주부씨는 고민 끝에 전단지 중에 유독 눈에 띄게 상품의 그림과 가격 옆에 빨간색 박스에 흰색 글자로 '1+1' 표기가 많은 일등마트에서 장을보기로 하였습니다. 스파게티를 만들 계획이었던 나주부씨는 전단지에 적힌 1+1 행사 품목 중 스파게티 소스를 찾았으나 가격을 보고 화가 났는데요. 나주부씨가 며칠 전 일등마트에서 장을 볼 때 1개에 3,000원이었던 동일한 상품이 두개로 묶인 채 6,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나주부씨는 마트의 전단지 광고가 과장광고라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마트의 눈속임 광고는 과장광고에 해당할까요?

평 결

정답은 "서비자: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하던 동일 상품을 1개를 2 개로 묶어 두 배 가격으로 팔고 있으면서 광고 전단지에는 상품 가격 옆에 눈에 띄는 방법으로 '1+1'이라고 표기한 건 소비자가 착각할 수 있도록 부풀려 광고한 과장광고라고 생각해요."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1호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과장의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

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 · 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되고,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등 참조).

이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마트에서 광고를 하면서 실제 로 표기한 판매 가격은 이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으므로, 이 광고가 있기 전과 비교하여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 측은 '1+1'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결국 마트는 '1+1' 행사를 광고하면서, 동일한 상품의 1개당 판매 가격을 광고 전 근접 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그 상품의 1개 판매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 광고상 판매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조제1항제1호 및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 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 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대법원은 6500원에 판매하던 제품을 2배에 못 미치는 9800원 으로 인상해 '1+1' 행사광고를 한 경우에는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결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에도 전단지에 '1+1'이라고 적혀 있던 스파게 티 소스는 일등마트에서 며칠 전에 1개로 판매했던 것과 동일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전단지에는 눈에 띄게 '1+1' 행사라고 상품의 가격옆에 빨간색 박스에 흰색 글자로 강조하여 표기한 것은 소비자인 나주부씨가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1호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과장광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
 세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교차로에서 주황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나요?





진우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솔로몬 교차로 전 방에 있는 신호등이 녹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자, 최근 교차로 도로 포장 공사로 이번 신호에 통과하지 못하면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생 각에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진우가 속 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앞에 있는 희주의 승용차와 추돌하게 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타당할까요?

※ 차량 신호등이 주황색 신호를 표시할 때에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 및 별표 2).

희주: 아! 내 허리.. 분명 제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 주황색으로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그쪽에서 신호위반하시고 사고까지 내신 거네요?

진우: 신호위반이라니요? 제가 비록 주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고서 사고를 냈지만, 지금은 교차로가 포장공사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표시가 없어요. 표시가 없을 때에는 주황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진입할 수 있다고요!

평 결

정답은 "희주: 아! 내 허리.. 분명 제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 주황색으로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그쪽에서 신호위반하시고 사고까지

내신 거네요?" 입니다.

본 건 사안은, 교차로에서 주황색 신호를 보고 진입하는 것이 신호위 반에 해당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의 황색 등화 시에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 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적색의 등화 신호에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에 대한 규정 내용과 달리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황색의 등화에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신호에서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8. 8. 22. 선고 208노1935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황색의 등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황색의 신호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 3657 판결 및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참조).

따라서, 교차로의 포장공사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우가 주황색의 신호를 보고서도 교 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보고 복사 · 전송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까요?





오늘도 출근 후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리는 오 수다 대리는 친구들과 메신저로 여행계획을 짜 고 있는 중이네요. 하지만 오늘도 아침부터 오 대리를 찾는 박부장님때문에 급하게 부장님께 달려가느라 메신저 로그아웃을 깜빡하고 말았 습니다. 하필 이때 평소 갈등을 겪고 있던 나화 상 대리가 우연히 지나가다 모니터를 보고 마 는데요......비극은 이렇게 시작되나 봅니다. 평 소 사사건건 오대리를 못마땅해 하던 나대리는 오대리를 곤란에 빠뜨리려고 오대리의 메신저 보관함에 있던 대화내용을 훔쳐본 것도 모자라 복사하여 그 파일을 상사인 박부장에게 전달하 는데요. 회사에서 창피당하고 난처하게 된 오 대리는 이런 나대리를 용서할 수 없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였다' 하여 고소를 하 는데요. 나대리는 과연 처벌을 받게 될까요?

- ① 라이언: 처벌이라니 무슨 소리야. 메신저 대화내용도 개인컴퓨터 보관함에 있던 과거의 내용이고, 그게 무슨 비밀이야? 그리고 로그인 상태에서 대화내용을 본 것이지 나대리가 오대리의 아이디를 몰래 사용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다구.
- ② 프로도: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는 행위가 꼭 아이디를 몰래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메신저 내용을 훔쳐보고 허락 없이 전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구. 당연히 처벌 받아야지.

정답은 "프로도: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는 행위가 꼭 아이디를 몰래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 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행위가 없더 라도 다른 사람이 메신저 내용을 훔쳐보고 허락 없이 전달하는 행위도 타인의 비밀을 취득 · 누 설하는 행위에 포함돼. 따라서 당연히 처벌 받 아야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① 메신저 보 관함에 저장된 내용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행위 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 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 · 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 신망으로 처리 · 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 에 저장 · 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 리 · 전송을 거쳐야만 열람 · 검색이 가능한 비 밀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 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 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 장 · 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 · 전송과 저 장 · 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 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만 열람 · 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 · 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 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 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② 메신저 내용을 열람·복사·전송한 것이 '침해'와 '누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참조). 타인의비밀 '누설'이란 타인의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

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례와 같이 이미 메신저에 로그인 상태인 것 을 이용해서 대화내용을 열람 · 복사 및 전송한 행위가 침해 · 누설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 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 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 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 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 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 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 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 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 · 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따라서 업무용인 사내메신저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어 개인용 컴퓨터에 전자파일 형태로 보 관 중인 과거의 대화내용은 '타인의 비밀'에 포 함되고, 비록 로그인 상태라 하더라도 몰래 그 메신저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컴퓨터에 저장되 어 있던 전자파일을 몰래 열람·복사 및 전송 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하는 행위 에 해당되어 처벌받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컴퓨터 메신저 내용을 훔쳐보고 전달하면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어 처 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
 세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의 훈련 중 사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책임여부





중학생인 복수와 고등학생인 세호는 학교법인 들꽃학원의 유도부 선수입니다.

유도 지도교사의 기본훈련이 끝난 후 휴식없이 곧바로 시작된 자율훈련시간, 복수는 자신보다 체격이 건장한 세호에게 엎어치기를 시도하다 가 균형을 잃고 함께 넘어지면서 목이 꺾이고 결국 사지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사고에 분노한 복수의 아버지 호진은 유도부 지도교사들에 잘못이 있다며 학교법인 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학교법 인에 책임이 있을까요?

- ① 호진: 쉬지도 않고 계속 훈련을 한데다가 딱 봐도 체격이 두 배는 커보이는 세호랑 훈련 을 하는데, 교사들이 신경도 안썼다는 거잖 아요? 아무리 자율훈련이지만 훈련파트너 가 적절한지, 다칠 위험은 없는지 제대로 신 경썼다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도 있었을텐 데 당연히 학교가 책임을 져야죠.
- ② 학교법인: 참 안타깝네요. 하지만 자율훈련 시간에 벌어진 일이고, 교사가 엎어치기하 라고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훈 련하면서 생긴 일을 왜 학교가 책임져야 합 니까? 더구나 유도는 원래 격한 스포츠니까 부상위험은 항상 있는 것인데 그때마다 학 교가 일일이 책임질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정답은 "호진 : 쉬지도 않고 계속 훈련을 한데 다가 딱 봐도 체격이 두 배는 커보이는 세호랑 훈련을 하는데, 교사들이 신경도 안썼다는 거 잖아요? 아무리 자율훈련이지만 훈련파트너가 적절한지, 다칠 위험은 없는지 제대로 신경썼 다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도 있었을텐데 당연 히 학교가 책임을 져야죠."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과 학생 사이는 사법 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학교법 인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위반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에 대하여 판례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의 물적환경을 정비하여야 하고, 학생이 교육을 받는과정에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고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합리적 조치를 하여야한다. 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문제가 된 사고와 재학계약에 따른 교육활동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학교장이나 교사가 그 사고를 교육활동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견가능성은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교육활동의 종류와 성질, 당해 사고와 관련된 교육활동 참여자들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학생과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

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운동부 학 생은 활발한 신체활동이 예정되어 있어서 학생 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운동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운동부 학생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히 점검 하고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학생의 실력 수준과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수단 을 마련해 두어야 하며. 그 훈련상황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 발생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판례는 "기량차이가 나는 상대에게 업어치기 기술을 시도할 경우 상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해 유도부 지도교사들은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학생들끼리 자유연습을 할 때에는 적절한 통제가 가능할 정도로 학생들의 동작을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으며, 과실 비율에 대하여는 학생의 과실을 40%, 학교법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복수가 세호를 상대로 업어치기를 시도할 경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유도부 지도교사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복수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어 과실비율에 따라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 결

주요 입법동향

최근 공포 법령



0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7. 1공포 /19. 7. 1 시행/대통령령 제29932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재창업 지원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0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9. 7. 2공포 /'19. 7. 2 시행/대통령령 제29950호)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다만, 제89조 중 대통령령 제2817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2 비고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150조 중 대통령령 제2945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3호의2 및 별표 6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03

주택법 시행령

('19. 7. 2 공포 /'19. 7. 2 시행/대통령령 제29946호)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인근 주민이 통행하던 도로를 폐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인근 주민의 불편과 입주자와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근 주민의 통행 및 교통 편의를 위해 기존 도로를 유 지 · 변경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로는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입법동향** 62 세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0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7. 9공포 /19. 7. 9시행/대통령령 제29974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장 선출방법, 위원의 임명·위촉기준 및 위원임기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 여부등의 조사·평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19. 7. 9공포 /'19. 7. 9 시행/대통령령29957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을 파악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보조율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202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원한 내역을 분기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수 있는 사업과 보조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입법동향

최근 국회 접수 주요법안



0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빛공해 발생 방지 · 저감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 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기한을 명확히 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개선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현행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 · 집행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7인)

지방분권이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지방 의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에는 국회와는 달리 예산·결산 등의 안건심사 업무를 지원해 줄 만한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시·도의회에 예산·결산 등 재정운용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는 예산정책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0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특정범죄신고자를 보복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특정범죄신고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이러한 안내방안 마련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 어 특정범죄신고자가 보호제도를 알 수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특정범죄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주요입법동향 64 세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0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최신정보기술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기술혁신과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관련 기술의 초기 시장을 창출하여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정부운영 방식과 대국민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음.

이에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외되는 전자적인 민원처리와 관련된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입법공백을 없애도록 하려는 것임.

0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화재 등과 관련한 안전시설물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점검 결과의 공개 관련 규정이 없어 이용객은 물론 시장상인들도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현대화사업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을 지원·보조할 수 있게 하고,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 달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게끔 하고 있으나, 정작 안전점검의 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점검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의 지원을 위한 현대화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3항).

06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5인)

최근 국회는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신뢰도 1.8%로 조사대상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국민들은 일하지 않는 국회와 망언을 일삼는 국회의원 등을 항하여 국회 해산, 국회의원 세비 삭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음.

한편,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을 제고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선거 이외에는 없는 상황임.

이에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입법동향

최근 입법 예고 주요 법령



0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19, 8, 5,까지)

1979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최초 발생일을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제정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기념

02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19, 8, 9,까지)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을 전문과목으로 필수화하고,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하여 도입되었던 조정점수를 폐지하며, 종전 청각장애 2 3 급에게 별도로 적용되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03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19, 8, 6,까지)

어린이는 환경오염 민감·취약계층으로서 화학물질 배출작용이 느리고, 한 번의 건강피해가 평생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도 성인보다 더 크게 피해를 입게 됨. 지난해 이러한 건강 특성을 가진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키즈카페 18백여 개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 농도를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하였음.

이에,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요인(중금속 노출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주를 확대하고자 함.

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19. 8.12.까지)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 여과성능 강화, 개별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 설치 권장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입법동향 66 세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0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19. 7.22,까지)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수급요 건 인정을 위한 기준기간을 이직 일 이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고용보험법 제40조 제2 항), 해당 조문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할 필요

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시행 서식 상 별지 제8호 서식에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 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 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날'을 추가하여 개정 하고자 함

0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19, 8,12까지)

적극행정 추진 일환으로 기관장 직접처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중요한 사안을 하급자 책임으로 부담시키지 않도록 기관별 위임전결규정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위임전결의 근거규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관련조항을 개정

0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19, 8,13,까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세대 수 이상 경우에는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고, 공동주택 관리비등, 회계감사의 결과 등 주요관리정보의 공개를 각 동별 게시판까지 확대하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행위 신설,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사의 결과 등에 대한 공개기간 및 절차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381호, 2019. 4. 23., 공포, 2019.10.24. 및 2020.4.24.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8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19, 8,20,까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무단매각 하는 등 주요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 태료 금액을 당초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100세대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386호, 2019. 40.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대상인 매입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양권으로 임대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법령해석사례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요건(「지방자치법」제109조 등 관련)

▶ 법제처-19-0055 / 회신일자 2019. 4. 18.

질이요지

지방의회의원 괴반수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사에서 제척되어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 규정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주석: 법제처 2019. 1. 16. 회신 18-0667 해석례 참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체계상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는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 의미를 괄호로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는 지방의회의원의 구속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되고 의원이 구속된 경우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지방의회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 배우자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고(제70조 본문),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만 있으므로(제70조 단서) 제척된 의원은 구속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과반수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사에서 제척되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본인·배우자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되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어려워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지방자치법」제109조제1항에 규정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해석사례 세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법령해석사례 2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다른 "초과점용등을 한 자"의 범위(「도로법」 제72조 등 관련)

▶ 법제처-19-0128 / 회신일자 2019. 5. 24.

질이요기

「도로법」 제72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 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초과점용등"이라 함)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변상금 징수 대상인 "초과점용등을 한 자"는 점용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대인만을 의미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초과점용등을 한 자"는 점용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도로법」제72조제1항에서는 변상금 징수의 적용 대상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차 여부나 소유권을 기준으로 변상금의 징수 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점용은 하천, 도로, 수면(水面) 따위를 점거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주석: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도로법」에서는 점용에 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점용 또한 실제 현황과 제반사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 태양을 포섭하는 용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초과점용등의 목적 및 그동안의 임대차 내역 등 실체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과점용등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초과점용등을 한 자가 임대인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만일 초과점용등을 한 자가 임대인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즉 해당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또한 임대인으로 한정되어 임차인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도로점용허가의 신청권자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도로법」 제61조의 문언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해석사례 3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 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

▶ 법제처-19-0713 / 회신일자 2019. 6. 5.

질이유TI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주석: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 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이 관리규약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의 업무를 입주 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주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선출하는 경우에만 선거관리를 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정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유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1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 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해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과정에서 선거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관리 기능은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인 투표 및 개표의 관리뿐만 아니라 입주 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 결정과 선출공고 업무, 임원 후보자의 등록신청서 접수 등 등록 관련 업무,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업무, 후보자 공고 업무, 선거운동 관리 업무 및 당선인 결정·통지 업무 등을 포함하는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투표 및 개표의 관리 외의 선거관리 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해석사례 제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제1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 승인(제4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데 만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임원 선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담보할 수 없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정당성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선출방법에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임원 선출 전후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주석: 법제처 2019. 2. 1. 회신 18-0596. 18-0764 해석례 참조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선거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 회의 임원의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5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1항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전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 방법이나 업무 내용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일 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여부 자체를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사례 4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등 관련)

▶ 법제처-19-0152 / 회신일자 2019. 6. 24.

질의요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접수와 배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접수·배정 담당자"라 함)와 배정된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별 담당자"라 함)가 있는 경우, 접수 · 배정 담당자와 개별 담당자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접수 · 배정 담당자와 개별 담당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하고 있고,[주석: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례 참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바, 형벌의 근거가 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8조제 1항에서는 임직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약칭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 반면, 접수·배정 담당자와 개별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이자 개인정보처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주석: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7헌마711 결정례 참조]

한편 접수 · 배정 담당자나 개별 담당자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를 「개인정보 보호법」제 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지 않는 경우, 접수 · 배정 담당자나 개별 담당자에 의해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발생 하더라도 실제 침해행위자들을 같은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므로, 접수 · 배정 담당자나 개별 담당자 또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제59조) 해당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제71조제5호·제6호 및 제72조제2호),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주석: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 도8766 판결례 참조]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 사례
 제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법령해석사례 ⑤

주민감사 청구 시 요건 심사의 범위(「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19-0225 / 회신일자 2019. 7. 5.

질이요기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를 한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이 일정 수 이상 연서(連署)할 것을 주민 감사청구인의 요건[주석: 주민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야 함.]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주민 감사청구의 대상으로,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것을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이유로 각각 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부분 단서 및 각 호에서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제1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제2호) 등 주민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에 관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제7항에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의 청구인명부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 감사청구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인 요건이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칙적으로 주민감사 청구의 요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청구 취지 및 이유에 적어 주장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제 그 사무의 처리가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 취지 및 이유에서 적시한 것처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가 수리된 이후 실시하는 감사에서 판단해야 합니다.[주석: 서울고등법원 2009. 7. 7. 선고 2008는35943 판결례 참조]

다만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적어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주민 감사청구서에 적힌 청구 취지 및 이유만으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여 감사청구서의 청구 취지 및 이유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주민 감사청구의 무분별한 남발이나 주민감사의 실시에 따른 행정력의 당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시행 법령 세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최근 시행 법령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월 16일 시행

2017년 2월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PwC)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36.7퍼센트로 OECD 회원 국가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동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인 10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보는 등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실태는 심각한 상황임.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남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7.6퍼센트에서 2016년 26.4퍼센트로 소폭 줄었지만, 여성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9.6퍼센트에서 2016년 41.0퍼센트로 늘어, 13년 전보다 격차가 더 커졌음.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여성과 남성 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커진 것임.

한편 2017년 3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른 성차별기업 명단 공개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만 보고하게 되어있어, 실질적인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직종 · 직급뿐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임금 현황까지 보고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고용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2 국회법

▶ 「국회법」일부개정, 7월 17일 시행

상임위원회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매월 2회 개회하도록 하는 등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는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경우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 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 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려는 것임.

③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월 17일 시행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 · 키 등의 신체 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직계존비속의 학력 · 직업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4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 7월 19일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당 근무시간과 근속승진기간에 포함되는 근무기간을 조정하며,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영어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해당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5 도로교통법 시행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 8월 1일 시행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 등은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소방용수 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9만원, 승용자동차 8만원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8월 15일 시행

오늘날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로 인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취약계층 등 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함.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월 24일 시행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 · 운영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 등을 대 상으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제안을 공모하는 민간제안제도를 신 설하고, 사업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으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며, 민간전문가를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시범도시에서의 재생에너지 범위 및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요건에 대한 특례,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 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수립기준 및 면적에 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타 지자체 **재개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시행 2019. 5. 16.]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제1조~제2조)
- 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제3조)
- 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제4조)
- 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제5조)
- 마.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사업 실시 및 가이드라인 마련(제6조~제7조)
- 바.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제8조~제9조)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2019-5-16 조례 제 716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소형·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 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 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민의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 용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가이드라인의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11]

제안이유

• 「교통안전법」에 따라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은 물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교육 (안 제3조~제4조)
- 다.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안 제5조)
- 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안 제6조)
- 마. 홍보(안제7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7-11 조례 제 13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고령운전자" 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1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총괄건축가 및 서구 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기준 등 제도적 근 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건축기본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목적을 명시(안 제1조)
- 서구 총괄건축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서구 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서구 총괄건축가 및 서구 공공건축가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과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7-11 조례 제167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의 건축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서구 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주요 공공사업의 총괄조정 등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현황에 부합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이하 "서구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 ② 서구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서구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 도시디자인(「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포함한다.)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2.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발주·기본설계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기획 및 자문
- 4.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④ 구청장은 서구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 ⑤ 서구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 으로 서구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⑥ 구청장은 서구 총괄건축가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⑦ 서구 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서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3조(서구 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서구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서구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서구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 에 대한 조정·자문
- 2.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 ④ 구청장은 서구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의 협조를 받아 인천광역시 공공건축가를 지원 받을수 있다.

제4조(서구 총괄건축가 및 서구 공공건축가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서구 총괄건축가 및 서구 공공건축가(이하 "민간전문가" 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 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전문가와 인천광역시 공공건 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9. 7. 11 조례 제16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구 총괄건축가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기 본법 ,제23조에 따라 2019년 1월 2일 위촉된 서구 총괄건축가는 이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서구 총괄건축가로 본다.

광주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

[시행 2019. 7. 1.]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 영상·영화 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함.

주요내용

- 영상 · 영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영상 · 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영상 · 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영상물 · 영화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영상 · 영화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 영상 · 영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영상 · 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영상 · 영화진흥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영상 · 영화문화산업 육성: 시장은 지역 영상 · 영화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창업, 전문 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실태조사, 배급 및 상영 활성화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 영화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이나 영상 · 영화 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영화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영화제의 지원: 시장은 영화를 통한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화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영상·영화문화 및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 · 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 · 외 영상 물 · 영화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광주광역시 영상 · 영화 진흥 조례안

(제정)2019- 7- 1 조례 제 52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영상·영화 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2.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 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 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 다.

제3조(영상·영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영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 2. 영상물·영화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 3. 영상·영화에 대한 교육, 영상물·영화의 보존활동을 위한 방안
- 4. 영상·영화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 5.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영화제의 지원 방안
- 6. 영상·영화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
- 7. 영상·영화문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 7. 경경 경외군의 시년에 글쇼한 세년의 목도 경한 8. 그 밖에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영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영상·영화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영상·영화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 2. 영상·영화문화 관련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영상·영화제작 촬영장 및 제작 지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 4. 영상·영화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영상·영화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영상·영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2. 영상·영화 관련학과 교수
- 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영상·영화 관련 업계 대표
- 4. 그 밖에 영상·영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조사·연구자료 수집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는 영상·영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조사 · 연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 무원,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는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영상 · 영화문화산업 육성) 시장은 지역 영상·영화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창업, 전문 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실태조사, 배급 및 상영 활성화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영화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이나 영상·영화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영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광주광역시 영화센터의 조직, 운영방안,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영화제의 지원) 시장은 영화를 통한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화제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 등)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내의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 있는 영상물 제작 장소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법인 · 단체 · 상영관의 지원)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영상·영화문화 및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 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영상·영화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적, 문화적 목적으로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광주광역시 관내의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전용상 영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영상물·영화제작사, 민간기관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영화 관련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1]

제안이유

• 근육장애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근육장애의 유형 정도별 복지욕구를 고려한 근육장애인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근육장애 인의 권리 보장 및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근육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육장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실태조사: 근육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 근육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등 : 근육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지원 : 근육장애인의 재활치료 등 근육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중증 근육장애인에 대한 지원 : 근육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가 중증의 근육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의료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 근육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위하여 근육장애인 의료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근육장애인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 근육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근육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함(안 제 12조).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7-1 조례 제 525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근육장애인의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육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근육병"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신경·근육골격계통의 진행성 질환을 말한다.
- 2. "근육장애인"이란 근육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 을 말한다.
- 3. "종합복지서비스"란 근육장애인이 특성이 고려된 상담·재활·의료·교육·여가 등의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4. "근육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 "라 한다)" 란 근육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근육장애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육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근육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근육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필요 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근육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여야 하며, 시민이 근육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근육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근육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육장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 2.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 3.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4.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근육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근육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 하여야 한다.

- 1. 근육장애인의 질환 및 장애 특성
- 2. 근육장애인에 대한 보육 및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복지 지원 및 이용 등의 현황
- 3. 근육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 현황
- 4. 그 밖에 근육장애인 및 그 가족의 권리보장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근육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근육장애인 및 그 가족의

권리보장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근육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근육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기획 및 실시
- 2.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 3. 근육장애인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의 근육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근육장애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근육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근육장애인 또는 그 가족으로써 근육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2. 근육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근육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②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성으로 의결하다.
-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근육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근육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 근육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근육장애인의 의료 및 재활치료
- 2. 근육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역량강화
- 3. 근육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거주시설 개선
- 4. 근육장애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
- 5. 근육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 6. 근육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중증 근육장애인에 대한 우선지원) 시장은 근육장애인에 대한 의료 및 돌봄지원 등 종합복지서비스가 중증의 근육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의료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근육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위하여 근육장애인 의료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근육장애인 의료지원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근육장애인 복지단체의 보호 · 육성) ① 시장은 근육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근육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6. 28]

제안이유

• 주민의 건강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의 삶의 질 항상과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기본계획 수립, 건강도시 조성 사업, 위탁 및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다. 건강도시위원회를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을 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9-6-28 조례 제 528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도 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말한다.
-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기본적 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주민을 위한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모든 주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도시기본계획)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건강도시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 3. 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 4.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5.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건강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건강도시 가치 제고 사업
- 2.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3. 건강도시 지표의 개발·관리



- 4.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
- 5.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위탁)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건강도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

제9조(건강도시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3.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4.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위원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전문가
- 2. 건강도시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 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③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 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281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 2019 7. 9]

제안이유

•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 혼부부의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 장려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



고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고 함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 제외 대상,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6조)
- 신청 및 지원절차,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9-7-9 조례 제 1707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 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신혼부부" 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 2.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치주택의 보증 금 마련(용도)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마련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 출자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 2. 부부 모두 무주택자
-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4.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5. 대출금의 한도는 1억5천만원 이내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3.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가구당 지원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 1. 지원금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로 공고일 기준 연1회 일시 지급하며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 2.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
- ③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 2. 임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 3. 구비서류
-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 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 ⑤ 시장은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 ⑥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 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 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결정일 등을 기 재·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관리) 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지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지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정 2019. 7. 9.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편이 실직했다. 갑자기 닥친 일에 남편은 패닉 상태였고 암담해하기까지 했다. 남편은 처음 며칠간은 도서관으로 출근(?)하고 다시 며칠간은 등산로로 출근했다. 남편에게 초조해하지 말라며 내가 추천한 곳은 바로 요리학원이었다. 남편은 요리를 곧 잘하는 편이어서 평소에도 요리책을 보고 맛있는 요리를 뚝딱 준비해 우리 가족들에게 '서프라이 즈'를 선물한 재주꾼이기도 했다. 손재주 치고는 꽤 쓸 만한 '요리꾼'이었기에 이런 기회에 취미나 살려보라며 권한 것이다.

어? 그런데 웬일? 처음엔 주저하다가 그냥 소일 삼아 며칠 나가본다던 남편이 슬슬 요리에 취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프로급의 실력 발휘를 하는 게 아닌가. '물 들어올 때 배질하라' 했던가? 남편은 그렇게 요리학원을 다닌 지 8개월 만에 한식 자격증까지 따냈고 급기야 조그만 국수집 하나 차리겠다는 포부까지말했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국수집 하나 내는 거야 일도 아니겠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식당이나 가게를 내는 일은 여간한 결심과 각오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더구나 우리가 거기까지 갈 줄은 몰랐기에 더욱 놀라운 일이기도 했다.

얼마 전 들은 친구 남편의 이야기도 우리 남편의 변화와 비슷했다. 친구 남편은 기러기 아빠였다. 그는 혼자 몇 년을 살다 보니, 어느 날 영양실조가 왔단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그날 요리책을 샀다. 그리고

책을 보면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단다. 그는 요리를 해보고 맛있으면 동료들을 불러서 같이 나누어 먹기 시작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분 은 일류 요리사 뺨치는 전문 실력을 갖추고 아내가 돌아오면 퓨전 요 리점을 하나 낼 계획이란다.

하루라도 빨리 많이 배워서 어서 다시 생계 현장으로 뛰어나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고 다시 여유롭게 웃을 수 있는 날들을 간절히 그리는 우리 시대의 남편들. 아빠들이 요리를 배 우는 현장은 그렇게 치열하고도 뭉클하다. 살려고, 가족들을 살리려 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남편들. 우리 주부들과 아이 들은 안다.

그래서 응원한다.

"아빠, 힘내세요, 요리하는 남자들 힘내세요, 세상의 모든 아빠들 힘 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박나영 | 조치원읍 도원로 16

세종시**디투어** 86 세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도심속미서지? 이곳에 가면 있다!



때 이른 무더위에 전국 각지의 주요 도심 피서지에는 벌써부터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 7월초 80년 만에 최고 폭염을 기록하면서 올 여름에도 더위의 기세가 맹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과 여름휴가 시즌에 맞춰 도심에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심 피서지 5곳을 소개한다.



세종시호수공원 물놀이섬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세종시호수공원에 가족 단위 피서객들에게 제격인 물놀이섬이 있다. 수심은 유아 발목에서 어른 무릎 높이 정도다. 물놀이섬의 중심부에는 아담한 솔숲이 자리하고 있어아늑함을 더한다. 특히 인근에 모래사장이 조성돼 있어 해변에 온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화요일과 우천 시휴장한다.

- 운영기간_ 7월 13일 ~ 8월 18일
- ▶ 운영시간_ 10~18시(정비시간: 12~13시)
- ♥ 문의전화_ 044-301-3633,3644



세종 합강캠핑장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세종 합강캠핑장은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명소로 자리잡았다. 사방이 개방돼 있어 강의 절경과 강줄기를 따라 이어지는 자연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있다. 아이들을 위한 분수시설에서 가벼운 물놀이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등산로 등이 조성돼 있어 다채로운 재미를 만끽할 수있다.

- 운영시간_ 오토존(입실 14시, 퇴실 13시) 태극존(입실 14시, 퇴실 11시)
- 요금안내_ 세종 합강캠핑장 홈페이지 (http://hapgangcamp.sejong.go.kr)



고복자연공원 야외수영장

5,351㎡ 규모로 설립된 무료 수영장으로 원형 유아용 수영조 1개 와 직사각형 다목적 수영조 1개, 물놀이용 미끄럼틀 2개, 에어바운 스 6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탈의실과 샤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이 잘 갖춰져 있다. 생존 수영과 공기놀이 스킨스쿠버, 심폐소생술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월요일과 우천 시 휴장한다.

- 운영기간 7월 20일 ~ 8월 15일
- ▶ 운영시간 10~17시
- 체험 프로그램 운영_ 매주 수, 목요일 13:30~16:30
- 문의전화_ 044-300-5325



방울새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소규모 아동용 물놀이터로 바닥 분수와 도랑 등 4가지 형태의 물놀이용 기구가 설치돼 있다. 스프레이 터널과 야자수 폭포 등 이색적인 분사 시설이 눈길을 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부담 없이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운영기간 7월 13일 ~ 8월 18일
- 운영시간_ 10~18시 (정비시간: 12~13시)
- ▶ 문의전화 044-301-3633, 3644



베어트리파크 물놀이장

공이 있는 수목원으로 잘 알려진 베어트리파크는 여름을 맞아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다. 평일에는 유아 단체를 대상으로 물놀이 캠프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주말에는 개인 관람객들도 이용 가능하다. 베어트리파크 입장객은 무료로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늘 쉼터와 테이블, 의자가 무료로 제공된다. 여름 휴가철인 7월 30일~8월 3일까지는 평일에도 개인 관람객들에게 물놀이장을 개방한다. 우천 시에는 휴장.

- 운영기간_ ~ 8월 18일
- 운영시간_ 10:30~16:30(안전점검 13:00~13:30)
- 준 비 물_ 수영복, 수영모, 수건
- 문의전화_ 044-866-7766

NEWS PAPER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충청신문

2019년 06월 28일 09명 (중합)

"법개정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 강회

충청권 시·도의회 주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

세종시의회가 주관하고 충청권 시· 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7일 세종시 L 호모표·도조항·기주리 구

행시에는 용단표 도망한 건강은 국 항의에 시하려 예상이의 의용하 비 뜻한 시의에 이용하 비 전한 시의에 이용하여, 함께서, 함께서 당한 시장 교수 가능의에의연임이 하면 등 300여의에 위해서, 함께서 이는 개회서의 양서 형서자들은 비 뜻은 필고 제상지에 개최을 추가는 는 구공한 의치는 퍼포먼스를 해왔다. 발표자들은 건강한 건강분설가 지 방지시제도 실면을 위해 지방지시에 방지시제도 실면을 위해 지방지시에 반지시제도 실면을 위해 지방지시에 반지시제도 실면을 위해 지방지시에 다 다 가를 문화하는 다 다 가를 문화하는

정책지위 전문이런 배치 등 지반의 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

가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깊은 공감대 통 성성였다. 보조함에 와서 전코시도의회의점험 의회 지방분권 IT는 제6자 회의을 열 고 지방자기법 연부개명 주인 경기 중 자요 현산과 항우 계획 등을 난어했다. 이문의 시장은 인사많을 분명 '시민 주권 정책을 실행한단처 중앙서 지 방으로, 지방정부에서 시민에게로 더 확실은 관련이었이 필요만을 실한 다" 15분위를 제기로 30년 등안 지



방자치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했던 지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 임규모기자in1303130 임규모 기자 lin130313038

▲ 2019.06.28 종합02면 충청신문

大田日载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국민청원'참 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서금택 시의장, 설치 주력

1일 현재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20 여일이 지났지만 참여인원이 1만 2000여명에 머물러 있다. 국민청원 마감기한인 11일까지 답변에 필요한 20만명 달성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참 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세종시의회는지난1월 충청권시·도

▲ 2019.05.02 종합 02면 대전일보

의회 의장단 명의로 '대통령 세종집무 실 설치 촉구 공동건의서 '와 제55회 인 시회 회기중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 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에 전 달했으며, 지난달 15일에는 국회광장 앞에서 대국민 홍보 퍼포먼스도 펼쳐 세종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금택의장은 "세종시가 온전히 행 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반드 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11.0+7.5)cm

2019년 05월 02일 02면 (종합)

동양일보

2019년 06월 04일 15명 (오파티어)



기자수첩

송곳질문·열정··· 세종시의회 행감 빛났다

신 서 희 취재부 차장 / 세종지역 담당

세종시의회가 지난달 31일로 2019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부터 시민제 보를 받는가 하면 언론과 소통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 세종시의회가 피감기관에 대해 송곳질문, 팩트폭력 등으로 기대치 높은 결과를 이끌어 냈 다는 평이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지난달 21일 교육안전위원회 윤형권 의원은 시민 안전국 일부 실.과장들의 잦은 출장과 업무분장 변경에 따른 전문성 결여 등 허술한 복무관리에 팩트폭력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 은 5월 22일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반년넘도록 전체회의가 전무한 사실 을 지적했다.

다음날 23일에는 세종시 건설교통 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차 위원장은 "세 종 리버하이가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 으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세종시는 현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상태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원 식 의원은 24일 환경녹지국을 대상으 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원 청춘 공원 조성사업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150억원의 보상비가 추가로 발생됐다 며 시민혈세 낭비를 집중 추궁했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지난달 24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매칭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기 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추진하 고 있지만, 분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모유 수 유가 불가능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지난해 혜택을 받은 산모는 한 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 추 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 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시 민불편 사항을 살핀 세종시의회의 성 적표는 "참잘했어요"가 아닐까.

(11.6+13.5)cm

금강일보

2019년 06월 27일 13명 (지역)

세종시의회 정례회 폐회 … 의원 공무국외활동 개정안 등 의결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민청원 참여 호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지난 25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56회 제1차 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공무국외활 동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74개의 안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 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 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제56회 정 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세종시교육청 2019 년도 추가경정예산아이 원아 가결됐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별로 본희의 히 예사결사특별위원히 구성결의야'등 의히 운영위원회 4건,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안'등 행정복지 위원회 16건 등이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 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형 22건이다. 세종=서중권 기자

▲ 2019. 06. 27_ 13면_ 금강일보

대전투데이

2019년 06월 27일 (2명 (정치)

세종시의회, 한국법제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지역시회 발전 및 양기관 선진화 위한 공동연구 및 협력 디짐



세종시의회 의장 서금택 는 26 인 세조시이징 이전시에서 71여 사회 발전과 양 기관의 선진화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 현 교 상호 업무현약을 체결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서금택 의장을 비롯, 세종시의원 4명(안 차염, 이염세, 손현목, 차성호과 한국법제연구원 3명(이익현, 최환 용, 김윤정)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효적인 입법정책 수립의 중요성 대해 공간하고 지연하아 해결을 위해 상생의 파트너십을

주요 현약내용으로 양 기관은

▲ 입법정책의 공동연구 ▲ 자치 번규의 임아 및 정비 ▲ 한숙정부 공유 ▲ 정책실무협의회 운영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이랫하기로 약속했다.

서 의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 한 자치법규가 적기에 제 · 개정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19, 06, 04 오피니언 15면 동양일보

▲ 2019.06.27 정치 02면 대전투데이

충남일보

2019년 06월 20일 02면 (정치)

세종시의원 해외 출장 · 연수 규정 강화… 조례 전부 개정

앞으로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나 연수활동 등 공무출장을 심 사하는 규정이 강화돼 까다로워질 전 망이다.

관련조례에 민간인 포함 심사위원 늘리고 위원장도 민간인이 맡도록 하 는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기 때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의 원들의 공무국외 연수·출장 비용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한 '의원 공무국외 활동 전부 개정 조례인'을 통과시켰 다고 밝혔다.

이윤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 정안에는 현행 7명인 심사위원단을 민간인 5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 성하고, 위원장에는 민간인을 위촉하 는 내용이 담겼다.

출장계획서도 출국일 40일 전에 제 출하도록 명시해 심사위원회 심사 강 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시의 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출장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 반환 규정을 마련해 사 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규정도 담겨 있

이 부위원장은 "최근 일부 지방의 회 국외연수 과정에서 빚어진 일탈 행 위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며 "외유성 공무국외 출장을 근절하 고 내실을 기하려는 의지를 조례안에 담았다"고설명했다.세종=한내국기자

▲ 2019. 06. 20_ 정치 02면_ 충남일보

충청신문



세종시의회가 26일 한국법제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과 양 기관의 선진화를 위해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세종시의회-한국법제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지역사회 발전 입법정책 공동연구·협력

세종시의회가 26일 한국법제연구원 비 ▲학술정보 공유 ▲정책실무협의 (원장 이익현)과 지역사회 발전과 양 기관의 선진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

양 기관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효적인 입법정책 수립의 중요성 대해 공감하고 지역현 안 해결을 위해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 화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입법정책 의 공동연구 ▲자치법규의 입안 및 정 회 운영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 고 적극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외 법제 및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와 연구 등을 수 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지난 2014년 1월 세종시 보람동 청 사에 입주해 업무를 시작, 이익현 제12 대 원장을 중심으로 130여명의 직원 이 법제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세종/임규모 기자 lin13031303@dailycc.net

(11.2+15.6)cm

2019년 05월 10일

충청신문

2019년 06월 25일 21면 (인물)



세종시의회가 24일 의원 및 사무처 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의면 다방리의 한 농가를 찾아 복숭아 봉지 씌우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세종시의회, 농촌봉사활동 전개

의원·사무처 직원 30여명 전의면서 복숭아 봉지 씌우기

세종시의회가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로 영농활동에 어렴움 을 겪고 있는 농가를 방문, 힘을 보탰다.

시의회는 24일 의원 및 사무처 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의면 다 방리의 한 농가를 찾아 복숭아 봉지 씌우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일손 돕기에 참여한 의원들은 37일간의 1차 정례회 기간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도 봉사활동 에 구슬땀을 흘렸다.

서금택 의장은 "농번기에 턱없이 부족한 일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일손 돕기를 통 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계 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규모기자 lin13031303@dailycc.net

▲ 2019. 06. 27_ 종합 03면_ 충청신문

▲ 2019. 06. 25_ 인물 21면_ 충청신문

세종시의회, 2019년 청소년 의회교실 모의의회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는 지난 3일 '청소년 의 회교실 모의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은 보람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본회의 및 스피치특강 체형 프로그 램으로 구성된 가운데 세종시의회 서급택 의장과 유원규 의원이 참석해학생들을 격려했다.

학생들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 은 직접 체험하고, 의회의 기능 및 역할 등은 학습

청소년 의장의 개의 선언으로 시작된 모의 본회 의는 ▲자유확년제 폐지에 대한 제안 등 2건의 2

분 자유발언 ▲시민 편의를 위한 버스 증설 방인 등 2건의 시정질문과 답변 ▲세종시 학생자치 활 성화를 위한 방안 등 2건의 교육행정질문과 답변 ▲세종시 CCTV 설치 확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의 조례인에 대한 찬반 토론과 의결 순으로 진행

서금택 의장은 "우리 세종시의회는 어린이와 청 소년이 드높은 뜻을 펼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명품 도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 력함 것"이라며, "이번 모의의회가 학생들의 다양 한 꿈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종화기자 netcore@hanmail.net

◀ 2019. 05. 10 지역 03면 세종매일

포토 에세이 90 세종의회소식 통권제**22**호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하라!



지난 6월 27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가 주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지방의회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서 헌법적 가치인 삼권분립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진정한 시민자치 시대가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イルションはショニューションは、玉稿)をフィンスはいて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식지 〈세종의회소식〉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 시의회 방청 및 방문을 통해 느낀점, 의회에 바라는 글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싣겠습니다.

- ※ 증명사진 및 관련사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 (담당자 박천국)
- 전화 | 044,300,7248 팩스 | 044,300,7219 이메일 | havnpark@korea.kr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넷방송 보러가기 counciltv.sejong.go.kr

| 통권 제22호| 표지제목 상상만 해도 즐거운 여름 풍경

발 행 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체(홍보기획담당)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전 화 044-300-7000

홈페이지 http://council.sejong.go.kr



